

발 간 등 록 번 호

11-1360000-000992-10

2018년도 자체평가계획

2018. 4.



목 차

I. 개요

- 1. '18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 2. 수립경과 5

II.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 9
-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11
-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13

III. 자체평가 대상

- 1. 주요정책과제 17
- 2. 재정사업 25
- 3. 행정관리역량 28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1. 주요정책과제 31
- 2. 재정사업 34
- 3. 행정관리역량 43

V. 자체평가 방법

- 1. 주요정책과제 47
- 2. 재정사업 50
- 3. 행정관리역량 58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63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63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64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65
5. 평가결과의 공개	65
※ 별첨 : 2018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67

I . 개 요



I. 개요

1

'18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 ① 자체평가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 신뢰도 제고
- ③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및 수용성 제고

① 자체평가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 정책 추진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평가관리를 통해 정책 성과 및 품질 제고
 -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반영 및 변별력 개선
 -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시 난이도 평가 실시
- ※ 20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확인 지표 포함, 표준편차 10점 이상 평가지표 비율 60% 이상 확보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등 중요과제를 성과지표에 반영 유도
 - 정책 수립 - 집행 - 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에서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노력, 협업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설정
 - 재정사업 평가결과(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대책)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반영 등 자체평가 부문간 연계 강화

②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 신뢰도 제고

- 특정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성을 개선하고 평가의 전문성 확보
-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체평가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 일반재정·재난안전 및 R&D 부문 소위원회 위원과 주요정책 부문 소위원회 위원 일부를 공동 활용하여 재정사업 평가와 주요정책 평가의 연계 강화
- 민간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주기적·사전적 평가 관련자료 제공으로 자체평가의 충실성 제고
- 자체평가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시 대면회의 실시 등을 통하여 소위원회별 운영 활성화

③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및 수용성 제고

-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전략 및 조직·인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류제도의 실효성 확보
- 자체평가 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및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의 수용성 제고
- 개인 성과보수,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과 연계한 환류체계 운영으로 기관 성과창출과 선순환 구조 구축

2

'18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비 고
'18.4.2.	'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통보	국무조정실
'18.3.1.~4.24.	'18년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성과관리 TFT) 의견수렴	
'18.3.1.~4.24.	'18년 계획(안) 외부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	
'18.4.16.~4.23.	'18년 계획(안)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실시	주요정책소위원회
'18.4.26.	'18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자체평가총괄위원회
'18.4.30	'18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 수립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 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

□ 위원회 운영 기준

- (운영세칙)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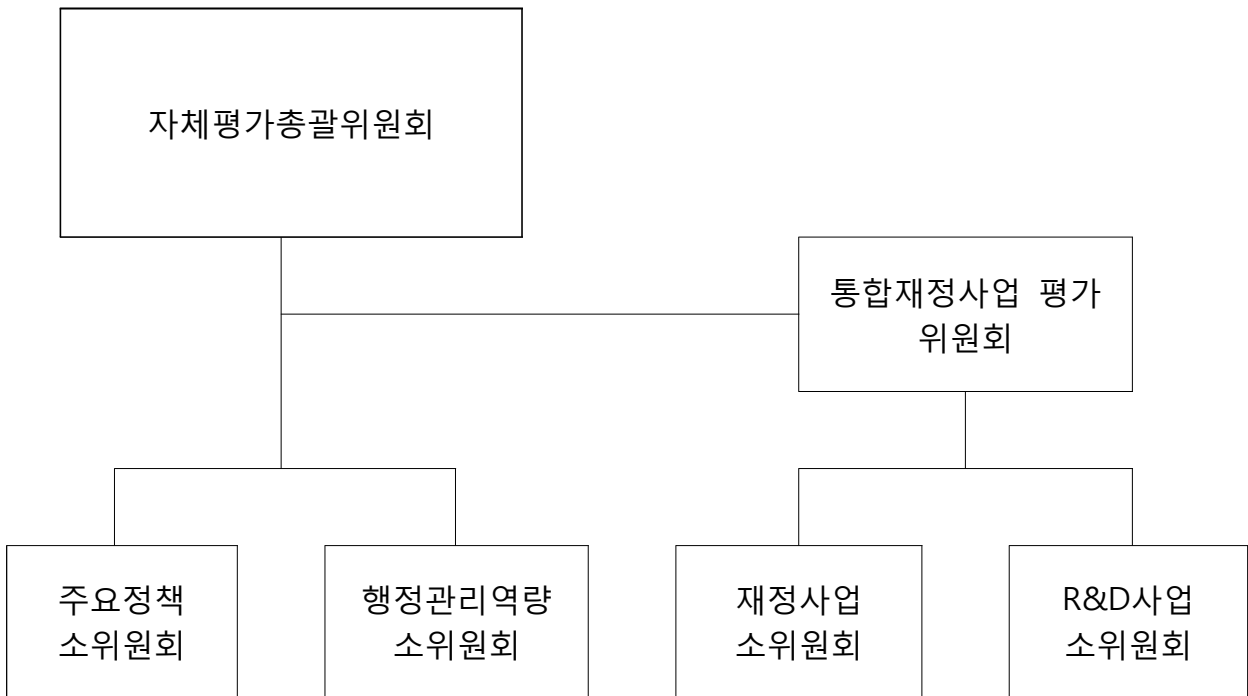
□ 위원회 운영체계

- 정책·예산·행정에 대한 평가위원회 통합 관리·운영으로 분야별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 자체평가총괄, 통합재정사업평가 위원회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재정사업, R&D사업 소위원회
 - 재정 및 R&D 소위원회 위원과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 일부를 공동 활용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와 주요정책평가의 연계 강화
- 위원회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의결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일반재정·정보화, 재난안전, R&D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 일반재정·정보화, 재난안전, R&D사업 평가결과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보고

○ 소위원회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 검토, 주요정책 분야 평가
- 행정관리역량 :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평가
- 재정사업 : 일반·정보화사업, 재난안전사업 분야 예산 평가
- R&D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예산 평가

<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총 27명)

구분	성명	소속	직위	구분						비고	
				총괄	주요정책	통합재정	재정	R&D	행정관리		
외부	1	유정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2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상청,국세청
	3	김영신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위원		○		○			
	4	김은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팀장	○	○			○		
	5	김영석	부경대학교	교수				○			
	6	김준모	건국대학교	교수	○	○	○			○	기상청,국방부
	7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8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	○	○		●	○	기상청,권익위
	9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본부장	○	○				○	
	10	봉선학	(주)티브이엔에이(TBNA)	대표					○		
	11	박미옥	동국대학교	교수	○	○					
	12	안명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13	연관희	한전전력연구원	부장		○					
	14	염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					
	15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	○	○	●		●	
	16	태원준	국민일보	부장		○					
	17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					
	18	이중우	인제대학교	교수	○	○					
	19	권원태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	정종철	남서울대학교	교수					○		
	21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2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					기상청,기재부
	23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					
	24	김태웅	한양대학교	교수				○			
	25	이철현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				
내부	26	당연직	기상청	차장	○		●				
	27	당연직	기상청	기획조정관	○		○				

(1)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별로 26명의 자체평가위원 중복 참여

- 자체평가총괄위원회(10명),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5명), 주요정책(19명), 행정관리역량(4명), 재정사업(6명), R&D사업(6명)

(2) ●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구성 비율

– 위원 구성(총 27명) : 외부위원 25명(92.6%), 내부위원 2명(7.4%)

<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11명	10명	1명	-	3명	25명	2명
44%	40%	4%	-	12%	100%	

□ 위원회·소위원회별 구성 현황

구 분	위원장	위 원
자체평가 총괄위원회 (10명)	유정문	김은연,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박미옥, 유해영, 이종우, 차 장, 기획조정관
통합재정사업 평가위원회 (6명)	차 장	김준모, 박중훈, 유해영, 이철현 기획조정관
주요정책 소위원회 (19명)	유정문	김영신, 김은연, 김준모, 노명현, 박중훈, 변순천, 박미옥, 안명환, 연관희, 염성수, 유해영, 태원준, 이정원, 이종우, 권원태, 정휘철, 조민수, 최충익
재정사업 소위원회 (5명)	유해영	김영신, 김영석, 안명환, 김태웅
R&D사업 소위원회 (5명)	박중훈	김영수, 김은연, 봉선학, 정종철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4명)	유해영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과평가총괄팀과 소위별 업무를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으로 구성

구분	역할	팀원(직책)	연락처	
성과평가 총괄팀	평가 총괄지원	혁신행정담당관	02-2181-0322	
		성과평가 담당사무관	02-2181-0332	
소위별 평가 지원팀	주요정책 (공통지표 관리부서)	주요정책 소위원회 지원	예보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510
			관측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702
			기후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393
			기상서비스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850
			지진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763
	통합재정사업	재정사업 소위원회 지원 ※ 통합재정사업 총괄	일반재정·정보화, 재난안전 사업 담당사무관	02-2181-0306
			R&D사업 소위원회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연구관
	행정관리역량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지원	조직 담당사무관	02-2181-0325
			인사 담당사무관	02-2181-0342
			정보화 담당사무관	02-2181-0411

□ 평가지원팀의 운영

- (성과평가총괄팀) 성과평가업무 총괄 및 각 소위별 평가지원팀 관리
 -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부문별 평가자료 관리·평가점검·지원
 -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평가관련자료 취합·제출 등
 -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 전자통합평가지스템(e-IPSES) 활용 지원

- (소위별 평가지원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 자체평가, 현장점검 등 일정관리
 - － 평가 관련자료 취합·정리 등
 -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Ⅲ. 자체평가 대상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대상 : 총 21개 국.소속기관, 33개 관리과제

※ 국·소속기관별 소관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종합 평가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예보국	1. 예보분석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① 선진예보기술 현업화건수(건)	3	○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 = 당해년도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
		② 태풍진로예보 거리 오차(km)	214	○ 중앙값(당해년도 태풍별 72시간 진로예보 평균 거리오차들) -태풍별 72시간 진로예보 평균 거리오차 = $\frac{1}{N} \sum_{i=1}^N (F_i - O_i)$
	2. 예보체계 개선과 소통을 통한 방재대응능력 강화	① 기상특보업무 만족도(점)	76.6	○ 기상업무국민만족도 조사 중 특보만족도(정확도, 시의성) 평균
		② 영향예보 기반 구축률(%)	75	○ 영향예보 기반 구축률(%) = (기상현상 영향예보 기반 생산 시스템 구축건수) / (기상현상 영향예보 기반 생산 시스템 목표 구축건수(8건)) x100
기후 과학국	3. 위험기상 실질적 대응을 위한 해양기상정보 향상	①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100	○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 $\frac{RMSE_{2018\text{목표}(0.33m)}}{RMSE_{\text{당해연도실적}}} \times 100$ * $RMSE = \sqrt{\frac{1}{N} \sum_{i=1}^N (F_i - O_i)^2}$ (예측횟수: N, 예측값: F, 관측값: O)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지진 화산국	4. 최적의 지진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고도화	① 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조밀도(km)	19.6	<p>○ 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조밀도(km) = $\sqrt{99,720 / \text{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720(km²) : 한반도 내륙지역의 면적(단, 북한 제외) · 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수: 유관기관 관측지료를 포함하여 지진조기경보분석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관측 자료 <p>※ 지진조기경보관측망 확충으로 관측공백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관측망 설치 및 안정화 후의 활용상 조밀도임</p> <p>※ 매년 설치 및 안정화 테스트 후 지진조기경보에 활용 중이며 그 기간은 2-6개월임</p> <p>※ '17년도 지진조기 활용 관측망 개수는 206개소로 조밀도는 22.0km 임</p>
	5.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 확보 및 정보 활용 극대화	① 지진정보서비스 만족도(점)	51.8	<p>○ 지진정보서비스 만족도(점) = $x_1w_1 + x_2w_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1 : 일반국민 만족도, w1 : 일반국민 만족도 가중치(0.7) - x2 : 지진업무종사자 만족도, w2 : 지진업무종사자 만족도 가중치(0.3) <p>※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7점 척도)에 따른 종합 만족도 점수</p> <p>【하위산식】</p> <p>※ 대상자: 일반국민 및 지진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1,000명 이상), 지진업무 종사자(100명 이상) <p>※ 측정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등</p> <p>※ 측정주체 : 외부 의뢰</p> <p>※ 점수 척도 : 7점</p> <p>(매우만족:100점, 만족:83.3점, 대체로 만족:66.7점, 보통:50점, 대체로 불만족:33.3점, 불만족:16.7점, 매우불만족:0점)</p>
관측 기반국	6. 체계적인 국가 핵심 기상관측망의 확대 및 관리 강화	① 기상관측장비 자동화율(%)	43.1	<p>○ 기상관측장비 자동화율 = (기상관측장비 자동화 실적 ÷ 기상 관측자동화 최종목표) × 100</p> <p>* 기상관측장비: ASOS, AWS 590개소/ 자동화장비: 시정현천계, 적설계</p> <p>** 최종목표: 590개소(ASOS 96, AWS 494)</p>
		②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시간)	102.8	<p>○ 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 = $\sum(\text{관측 부문별 장애시간} \times \text{가중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 지상(45%), 해양(40%), 고층(15%) <p>* 가중치는 총예산대비 각 부문별 예산비율(5년 평균)로 정의(관측장비의 중요도는 같음)</p> <p>* 관측 부문별 주요장비 연간 장애시간 = {장애율(%) × (365일 × 24시간)} ÷ 100</p>
	7. 정보자원 가용률 향상으로 기상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① 기상청 날씨누리 사용자 만족도(점)	58.5	<p>○ 기상청 날씨누리 사용자 만족도(점) = $\sum(\text{척도별 가중치} \times \text{척도별 선택인원}) / \text{총 설문인원} \times 5\text{점 척도}$</p>
		② 슈퍼컴퓨터 서비스 만족도(점)	88.2	<p>○ 슈퍼컴 서비스 만족도(점) = (① 슈퍼컴 사용자 만족도 × 0.8) + (② 슈퍼컴 사용자 기술지원 충족도 × 0.2)</p> <p>* 가중치는 사용자 요구사항의 비율로 정의(중요도는 같음)</p>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국가기상 위성센터	8. 입체적 기상관측을 위한 차세대 기상위성 개발	① 기상탐재체 핵심품목 국산화율(%)	14.3	○ 기상탐재체 핵심품목 국산화율 = (핵심품목 국산화 건수 ÷ 총 핵심품목 국산화 건수) × 100
		② 기상·우주기상 자료처리 기술 평균 국산화율(%)	100	○ 기상·우주기상 자료처리 기술 국산화율 = (기본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부가산출물 및 활용 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우주기상 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3
	9. 기상위성자료 활용기술 선진화	① 위성영상 적시 제공률(%)	97.9	○ 위성영상 적시 제공률 = (목표 시간 내 정상 표출 건수 ÷ 기상위성 관측자료 총 수집 건수) × 100
		② 위성기술 현업적용 건수	7	○ 위성기술 현업적용 건수 = 당해연도 현업화 기술로 인정된 실적 건수
기상 레이더 센터	10.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레이더 관측인프라 고도화	① 레이더 관측망 첨단화율(%)	90.9	○ 기상청 이중편파레이더 설치율 = $\sum_{i=1}^n A_i / 11 \times 100$ 1. A_i : 설치완료 대수 2. 대상지점: 이중편파레이더 도입사업이 완료된 지점으로 매년 확대
	11. 신속정확한 범정부 레이더 통합정보 서비스 구현	① 레이더자료 활용기술 현업화 실적(건)	3	○ 레이더자료 현업화 실적 = 당해연도 레이더 현업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 건수
수치 모델링 센터	12. 기상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현업 수치예보기술 고도화	① 한국형수치예보 모델의 현업대비 예측 성능비(%)	95.5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대비 예측 성능비 = $(B \div A) \times 100$ A: 현업 전지구예보모델의 500hPa 지위 고도 5일 예측오차의 이상상관계수 B: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500hPa 지위 고도 5일 예측오차의 이상상관계수 * 북반구 500hPa 고도 5일 예측 * 계절 변동성을 고려하여 1월, 7월에 대한 평균값 비교
	1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정책 지원	② 동아시아지역 단기오차 개선율(%)	3.7	○ 동아시아지역 단기오차 개선율 = $[(A - B) \div A] \times 100$ A: 현업 모델의 예측오차 B: 당해연도 연구개발을 통해 개선된 예측오차 * 동아시아 영역 850hPa 기온 2일 예측 * 계절변동성을 고려하여 1월, 7월에 대한 평균값 비교
기상 서비스 진흥국	14.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① 기상기업 매출액 (억원)	1,596	○ 기상기업 매출액(억원) = \sum (당해연도 발표 기상사업 등록기업 매출액)
	15.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확산	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률(%)	23.0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률(%) = (당해연도 융합서비스 활용건수 ÷ 최근 3년간 융합서비스 개발건수) × 100
		② 기상자료개방포털 서비스 활용도 (만건)	237	○ 기상자료개방포털 서비스 활용도(만건) =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연간 데이터 다운로드 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수도권 기상청	16. 기상기후서비스 활용 확대를 통한 수도권 기상재해 예방	① 방재·기후서비스에 대한 추천 고객지수(점)	30.0	○ 방재·기후서비스에 대한 추천 고객지수(NPS) = (추천고객 수-비추천고객 수)÷응답자 수 * 100 【측정방법】 ① 평가항목 : 타기관에 수도권기상청의 방재·기후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② 평가척도 : 11점척도 ③ 측정방법 : 9-10점(추천), 7~8점(중립), 0-6점(비추천)으로 측정함
		② 수도권지역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률(%)	100.0	○ 수도권지역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률(%) = (B ÷ A) × 100 - A : 수도권청 관할 지자체 수(33개) - B :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제공된 지자체 수
부산지방 기상청	17. 기상·지진서비스 확산으로 지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	① 지역기상·지진 서비스 확산지수(%)	110.0 (11건)	○ 지역기상·지진서비스 확산지수 = $\left[\frac{\text{당해 연도 지역기상·지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 반영 건수}}{\text{직전 연도 지역기상·지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 반영 건수}} \right] \times 100$ ※ 당해 연도 지역기상·지진서비스는 신규·개선된 서비스만 인정함 ※ 2017년 지역기상·지진서비스: 10건
		② 연구개발과제 (R&D)업무 활용률(점)	75.0	○ 연구개발과제 업무 활용률(점)= $\frac{\text{서비스 적용 건수}}{\text{당해 연도 연구개발과제 건수}} \times 100$ 1. 2018년 부산지방지방청 연구개발과제(R&D): 총 4과제 - 예보(영향예보 기반구축), 기후(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해양(해무발생 예측), 관측(관측 품질관리) 2. 서비스 적용 인정대상 - (내부)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관측·예보 현업 지원에 적용된 건수 - (외부)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된 건수
광주지방 기상청	18. 지역민 안전과 행복 지원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구현	① 광주전남지역 기상기후정책 반영·활용 향상률(%)	13	○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기상기후정책 반영·활용 건수의 향상정도 측정
		② 취약계층 기상기후정보 종합만족도(점)	76.5	○ 취약계층 기상기후정보 종합만족도 = Σ[(항목만족도×0.7)+(체감만족도×0.3)]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강원지방 기상청	19. 정책 결정기관과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 더하기	① 기상기후 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13	○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정책 업무에 기상기후 정보가 활용된 건 【하위산식】 1. 강원 지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출연 연구기관 2. 인정대상 : 지역기상기후서비스 제공, 기술 이관·지원·자문, 별도계획을 통한 협업 등으로 관계 기관 주요정책 수립 및 서비스를 지원한 사례 ①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등에 반영된 경우(공문서) ②보도자료 배포,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지역민에 홍보된 경우 ③기술 이관 또는 활용지원에 대해 별도 증명된 경우(공문서) ④업무협약, 별도 협업계획 등을 통해 추진된 경우
		②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점)	65	○ $[\sum\{(\text{응답치} - 1) \div (\text{척도} - 1) \times 100\}] \div \text{응답수}$ 1. 조사대상/인원 : 어업인, 지자체, 관계기관 및 해양레저 사업체 / 200명 2. 조사내용 : 해양기상서비스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3. 조사방법 : 온라인 및 대면 조사 병행 4. 측정방법 : 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로 만족도 산출
대전지방 기상청	20. 지역민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수요자 만족 기상기후서비스 실현	①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수요자 종합 만족도(점)	78.5	○ 지역 기상기후서비스 수요자 종합 만족도(점) = 지역민 만족도×W ₁ + 방재관계기관만족도×W ₂ + 기후서비스관계기관 만족도×W ₃ * 가중치 W ₁ : 0.4, W ₂ : 0.3, W ₃ : 0.3 ※ 만족도 = $[\sum\{(\text{응답치} - 1) \div (\text{척도}-1) \times 100\}] \div \text{응답수}$
		②충남 해양기상서비스 향상도(점)	18	○ 충남 해양기상서비스 향상도(점) = A + B A. 관계기관 정책반영 점수(건당 +5점) B. 해양기상서비스 기반 구축 및 확대 점수(건당 +3점 또는 +1점) ※ 점수계산: 정책반영 +5점/신규 개발 +3점, 서비스 개선·제공 각 +1점
제주지방 기상청	2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안전제주 기상기후서비스 구현	① '기상기후 융합 위킹플랫폼' 기업 유치수(개)	7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구축하는 「기상·기후 융합 위킹 플랫폼」에 유치하는 기업 수 【하위산식】 1.입주대상: 지역 특화산업과 기상기후 융합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 지역특화산업: 기상기후와 융합할 수 있는 관광, 레저, 농어업, 신재생 에너지, 문화 등 2.입주여부 판단: 위킹플랫폼에 입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기업
		② 해양기상서비스 만족도(%)	60.2	○ 해양기상서비스 만족도= $\sum(\text{척도별 가중치} \times \text{척도별 선택인원}) / \text{총 설문인원}$ - 조사기간 '18년 3'11월 - 조사대상/최소인원: 일반국민(어업종사자 등), 유관기관 해양업무 담당자 /200명 - 조사방법: 현장 조사, 온라인(국민생각함), 공문서 - 조사내용: 해양기상서비스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 점수기준: 7단계로 측정하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가중치) 부여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대구기상 지청	22. 지역민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가치 확대	① 지역기상기후 서비스 유관기관 정책 활용도(건)	15	○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정책에 기상기후서비스가 활용된 건수
		②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만족도(%)	84.0	○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만족도 * 리커트 7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 7점 척도를 100점 환산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로 만족도 산출
전주기상 지청	23. 전북지역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강화	①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활용 만족도(점)	76.9	○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활용만족도 = $[\sum \{(\text{응답치}-1) \div (\text{척도}-1)\} \times 100] \div \text{응답수}$ * 측정분야: 방재·해양·농업 * 조사방법: 온라인 및 대면조사 * 측정시기: 11월 * 측정주체: 설문조사 전문기관
		②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100	○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 $(B \div A) \times 100$ * A: 14개 시·군 * B: 임계값 설정완료 지자체 수
청주기상 지청	24.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역민 안전 강화	① 방재기상서비스 수요자 만족도(점)	78.6	○ 방재기상서비스 수요자 만족도(점) = $[\sum \{(\text{응답치}-1) \div (\text{척도}-1)\} \times 100] \div \text{응답수}$ 【하위산식】 1. 조사대상: 청주기상지청 방재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언론 수요자 등 2. 조사기간: 11~12월 3. 조사방법: 서비스 실 수요자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 4. 조사내용: 방재기상서비스의 정확성, 신속성, 유용도 등에 대한 사용자별 만족도 5. 점수기준: 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며 각 단계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② 유관기관 기상기후서비스 직접 활용 건수(건)	11	○ 유관기관이 기상기후서비스를 지역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건수 【하위산식】 1. 유관기관: 충북 소재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2. 서비스분야: 지역 주력산업 분야 3. 인정기준 가. 유관기관이 기상기후서비스를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공식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서비스 한 경우 나. 유관기관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정책보고서에 '기상기후서비스 활용' 이 명시된 경우 다. 동일 사군에서 복수로 활용된 경우, 사군 별 1건으로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항공기상청	25.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으로 선제대응력 향상	①항공기상관측장비 장애 저감률(%)	0.098 (6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상관측장비 장애 저감률(%) = $\{ \sum(\text{공항별 정보생산 중단시간}) \div \text{총 생산시간} \} \times 1000$ ○ 평가점수 산출 = $\left\{ 1 - \left(\frac{\text{실적치} - \text{목표치}}{\text{목표치}} \right) \right\} \times 100$ ※ 60% 미만은 60점으로, 100% 초과는 100점으로 환산 【하위산식】 - 총 생산시간 = 365일×24시간×7소 = 61,320시간 - 정보생산 중단시간 = 항공기상청 통합 DB의 항공기상관측장비 자료 누락 시간 ※ 계획정지, 정전/통신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 등으로 인한 시간은 제외 ※ 장비 다수의 센서 중 1개 센서의 정보가 미 생산되더라도 운영시간에서 제외 ※ 분 단위는 사사오입함 - 측정 공항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 측정 기간 : 2018.1.1. ~ 12.31.
		②공항정보 정확도(%)	7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정보정확도 = $\sum \text{공항별 평가점수} \div \text{측정 공항 수}(7\text{개})$ 【하위산식】 - 공항별 공항정보 평가점수 = $\sum \text{공항정보 평가점수} \div \sum \text{총 건수}$ - 총 건수 = 발표된 건수 + 미발표 건수 - 측정 공항 :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 평가요소 : 뇌전, 대설, 강풍, 운고, 호우, 저시정 - 측정 기간 : 2018.1.1. ~ 12.31.
	①고객참여 성과 지수(점)	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참여 성과 지수 = $\{ \text{고객 정책참여 만족도 점수} \times \text{가중치}(30\%) \} + \{ \text{고객 요구사항 이행률} \times \text{가중치}(70\%) \}$ 【하위산식】 - 고객 정책참여 만족도 = 항공기상정책 수립 참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 참여고객수: 항공기상청 주최의 방재협의회, 자문회의, 워크숍 등 고객 접점회의 직접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책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설문조사)하며, 참여 고객의 규모는 고객의 상황 및 근무일정 등 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됨. - 고객 요구사항 이행률(%) = $(\text{고객 요구사항 이행완료 건수} \div \text{고객 요구사항 이행계획 건수}) \times 100$ · 고객 요구사항 이행계획 = VOC 증장기처리 계획 건수 + VOC 단기처리 계획 건수 	
26. 항공안전을 위한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 제공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 18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기후 과학국	27. 고품질 기후·기후변화 정보 제공 확대로 국가 정책지원 강화	① 종합기후변화감시 정보 서비스 확대율(%)	42.9	○ 종합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확대율(%) =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실시 건수 / 핵심기후변수 최종 서비스건수(35건)} × 100
		②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력도(점)	26.5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협력도(점) = A × 2 + B × 1.5 + C × 1 - A: ∑ 국제회의 의제 대비 30% 이상 발언 회의 수 - B: ∑ 관련 기관·부서 참여 협력회의 개최 수 - C: ∑ 보도자료, 국문판 보고서 발간 등 이해확산 활동 수
	28. 선진 기후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후 서비스 향상	①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점)	84.0	○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점) = (∑(Xi-1) * 16.7) / N (단, Xi는 평가항목의 7점 척도 평가점수, N은 전체 응답자수)
		② 수문기상정보 활용률(%)	73.9	○ 수문기상정보 활용률(%) = $\frac{\text{사용자수}}{\text{응답자수}} \times 100$ *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사용자수: 물관리(하천 홍수 범람 대응, 댐수위조절 등) 업무에 직접 또는 계가공하여 활용한 사용자 수
기획 조정관	29. 국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국제 활동 증진	① 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83.3	○ 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 = {(응답결과-1) ÷ (측정척도-1)} × 100
국립기상 과학원	30. 기상기후 위험 대응 지원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② 기상위험 예측 개선도(%)	91	○ 대표 현업 시스템 예측정확도 평균 개선율 (1) 행사·연무예측시스템 (2) 파랑예측시스템 (3) 기후예측시스템
	31. 미래를 대비한 기상기후과학 연구 선도	① 기후변화시나리오 생성률(%)	33	○ IPCC AR6 대응 국제표준 기후실험체계(CMIP6)에 근거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 건수를 측정
② 기상기후정보 요청 대응 건수(건)		114	○ 외부 공식 요청에 의하여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생산한 자료의 제공건수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32. 조직역량 전문성 강화 및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 핵심분야 교육 현업적용도(점)	4.33	○ 핵심분야 교육 현업적용도 = $\frac{A+B+C+D}{4}$ * A: 예보분야, B: 위성분야, C: 레이더분야, D: 수치예보분야 【하위산식】 현업적용도 = ∑(응답치) ÷ 응답수
				33. 기상지식 보급을 통한 기상과학 문화 확산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일반재정사업>

□ 평가 대상

- 2017년도 예산이 투입된 R&D 및 재난안전 사업을 제외한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전체
- 평가대상 사업 중 인건비, 기본경비 및 소액사업(10억원 미만)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평가 제외

< 평가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7년	비고
< 합 계 >		67,467	
1. 기상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2,512	
	①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운영(정보화)	15,802	
	②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26,710	
2.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2,939	
	③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1,970	
	④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969	
3. 기상산업 진흥		12,074	
	⑤ 기상산업 활성화	9,145	
	⑥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1,452	
	⑦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1,477	
4.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정보화)		3,431	
	⑧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1,596	
	⑨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정보화)	1,835	
5.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3,295	WMO 국가분담금(ODA)은 평가 제외
	⑩ 국제기구 및 양국간기상협력	331	
	⑪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2,964	
6.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3,216	
	⑫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721	
	⑬ 기상지식 보급 및 사회 확산	1,095	
	⑭ 선진 기상전문인력 양성	867	
	⑮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66	
	⑯ 기상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367	

〈재난안전사업〉

□ 평가 대상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대상 중 R&D*를 제외한 15개 일반·정보화 사업 평가

* 재난안전사업 중 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별도평가

- 평가사업 단위는 세부사업 기준

< 평가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피해유형	세부사업	2017년 예산	비고
< 합 계 >		73,214	
풍수해	① 국가태풍센터 운영	1,093	
	② 기상관측선 건조 및 운영	1,402	
	③ 기상레이더 운영	8,374	
	④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2,371	
	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6,452	
	⑥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296	
	⑦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정보화)	828	
	⑧ 장기예보 선진 서비스 체계 구축	2,088	
	⑨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12,501	
	⑩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2,218	
	⑪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9,366	
	⑫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740	
지진	⑬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20,266	
항공교통 재난·사고	⑭ 항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3,658	
	⑮ 항공항행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561	

〈R&D 평가〉

□ 평가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 평가 대상사업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담당부서	비고
	'15년	'16년	'17년		
①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	22,799	22,072	23,003	기획조정관 연구개발담당관	-
②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7,450	7,750	8,428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
③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기상청)	42,130	30,609	14,73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참여부처 공동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

평가 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에 대한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IV.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운영 원칙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운영 체계화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대면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개인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등급 적용

○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실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정과제 등과 연계성이 높은 과제 발굴·반영, 국정현안 품질 제고 노력 등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반영 및 변별력 개선

-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여부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시 난이도 평가 실시

※ 2018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성 확인 지표 포함, 표준편차 10점 이상 평가지표 비율 60% 이상 확보

○ 정책 수립 - 집행 - 평가 및 환류 등 정책추진 단계에서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노력, 협업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설정

○ 자체평가 부문간 연계 활성화

- ‘주요정책’ 부문 평가시 ‘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미흡사업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주요 변경내용

○ 평가항목 신설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토록 제도 운영
 - 주요정책추진의 계획단계 평가항목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신설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주요 정책 (100점)	계획 (35점)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6점)	○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6점)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5점)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과거 성과추세, 전년도 실적수준, 벤치마킹 대상기관의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적용 적극성 - 사업추진 여건 변화, 사업방식 변화 등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성 반영 적절성 - 목표치가 직전연도 실적과 최근 3년 평균 실적 중 최대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상향됨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전년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8점)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 계획 추진 상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집행 (25점)	추진일정 충실성 (7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성과지표 달성도 (10.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지표 또는 대표지표(난이도 평가대상) 달성도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적 대응성 (7.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 주요성과,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 업무발전계획)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 통한 기대효과 제시

<일반재정사업>

□ 평가지표 설정방향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설정

□ 평가지표 확정

- 사업의 평가지표를 기상청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자체평가 지표 >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20
계			100
가점	(일반재정)	○ 예산 절감 및 집행률·효율성 제고 노력	5
	(정 보 화)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서비스 혁신 성과 및 집행률 제고 노력	5

□ 주요 변경내용

- 사업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 운영(기재부 메타평가 폐지)
- 미흡사업에 대한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폐지하고 제도개선 중심의 환류계획 마련
-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대외 공개

	2017년	2018년
평가 대상	◆ <u>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u>	◆ <u>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u>
자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규모 기준’ 상대평가 -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로 간소화 ◆ 분야별 평가지표를 통합하되, 특성화 지표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규모도 상대평가 준수 권고) - 3단계(우수/보통/미흡)로 등급화 ◆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R&D, 재난, 지역발전 등 분야는 소관 평가기관(과기정통부, 행안부, 지역위) 지침에 따라 평가
메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평가를 통합하여 부처 단위의 종합적 평가 ◆ 메타평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부처별 메타(상위)평가 실시 	◆ 폐지
평가 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단위의 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실시 * ‘16년 평가대상사업 예산의 1% 수준 ◆ 세출구조조정안 마련 * 개별 미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부처가 자율적 결정 ◆ 기관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단위 자율적 환류계획 마련 - 미흡사업에 대한 기계적 지출구조조정 계획 수립 폐지 -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평가결과 환류계획 마련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평가단계 및 평가지표		배점	측정 방법										
관리 (30점)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점	<p>□ 평가 당해연도 집행률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요인에 의한 불용 및 이월액, 낙찰차액,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p>※ 최종점수 = 집행률(실집행률)×0.3</p>										
결과 (70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p>□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 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매우적극</td> <td>적극</td> <td>보통</td> </tr> <tr> <td>배점</td> <td>50</td> <td>48</td> <td>46</td> </tr> </table> <p>※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p> <p>※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출</p>	답변	매우적극	적극	보통	배점	50	48	46		
	답변	매우적극	적극	보통									
배점	50	48	46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20점	<p>□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p>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5~9</td> <td>10~14</td> <td>15~19</td> <td>2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가점 (5점)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집행률·효율성 제고 노력	5점	<p>□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3점) ○ 집행률 제고 노력(2점)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및 집행률 제고 노력	5점	<p>□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3점) ○ 집행률 제고 노력(2점) 										

〈재난안전사업〉

□ 평가지표 설정방향

- 당초 일반적인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추가
 - 성과우수성 지표를 통해 재난·사고 예방 및 저감 성과를 점검하고, 재난안전 정책적 중요도를 가점으로 도입

< 자체평가 지표 >

단계	평가항목	평 가지 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 (1-1)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사업목표-내용 연계성, 일정 준수	3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등	50
		○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 재난·사고 예방 및 저감 성과, 자체평가 위원회 검토 결과 등	20
계			100
가점	(재난안전)	○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4

□ 주요 변경내용

- 재난안전 사업 평가 대상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가점사항을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기여도에서 재난·안전 관리 정책적 중요도로 변경

	2017년	2018년
평가 대상	▶ 모든 재난안전 사업	▶ 모든 재난안전 사업 (재난안전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체 평가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 가점 사항 : '재난·안전사고 예방 등 사회적 기여도'	▶ '사업 수 기준' 상대평가 (소액사업 위주로 '미흡' 평가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권고) ▶ 가점 사항 :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기존 가점사항은 성과우수성 지표로 통합)
평가 위원회	▶ 재난안전사업 5개 이상 소관 부처는 의무적 설치	▶ 재난안전사업 3개 이상 소관 부처는 의무적 설치
평가 결과 환류	▶ 자체 평가 결과를 부처 예산요구 단계에 반영	▶ 미흡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평가단계 및 평가지표		배점	측정 방법										
관리 (30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30점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사업 관리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15점)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6 ~ 8</td> <td>9 ~ 11</td> <td>12 ~ 14</td> <td>15</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6 ~ 8	9 ~ 11	12 ~ 14	1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6 ~ 8	9 ~ 11	12 ~ 14	15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10점)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4 ~ 6</td> <td>7 ~ 9</td> <td>1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4 ~ 6	7 ~ 9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4 ~ 6	7 ~ 9	10										
			<input type="checkbox"/> 계획대비 추진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5점)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1 ~ 2</td> <td>3 ~ 4</td> <td>5</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1 ~ 2	3 ~ 4	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1 ~ 2	3 ~ 4	5										
결과 (70점)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확정된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 성과지표별 점수 = 50점×가중치×달성율×성과목표·지표 적절성 ※ 점수합계 : 각 성과지표의 지표별 점수 합산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20점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저감 효과, 기타 공익 증진 효과 등 사업성과의 우수성 평가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어느 정도</td> <td>상당한 정도</td> <td>예</td> </tr> <tr> <td>배점</td> <td>5~9</td> <td>10~14</td> <td>15~19</td> <td>20</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가점 (4점)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4점	<input type="checkbox"/> 국정과제, 국가안전관리 기본(집행)계획,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계획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이슈 정도, 안전체감도 등의 결과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아니요</td> <td>중요</td> <td>매우중요</td> </tr> <tr> <td>배점</td> <td>0</td> <td>1~3</td> <td>4</td> </tr> </table>	답변	아니요	중요	매우중요	배점	0	1~3	4		
답변	아니요	중요	매우중요										
배점	0	1~3	4										

<R&D 평가>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등 2개 부문 3개 지표로 평가

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배점	측정방법
성과 목표 달성도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0점	<input type="checkbox"/>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 지표별 점수: 총 배점(30) × 지표가중치 × 달성률 × 성과지표 가중치 ○ 최종점수: 지표별 점수 합산
성과 우수성	성과 분야별 사업의 성과 및 대표성과는 우수한가?	50점	<input type="checkbox"/> 연구 종합성과의 우수성 및 대표성과의 우수성 관점에서 성과를 구분하여 정성평가에 의한 점수 부여 <input type="checkbox"/> 성과 우수성은 ‘종합적 연구성과’와 ‘대표성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는 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실시 [종합적 연구성과(30점)] <input type="checkbox"/> (핵심 성과유형의 결정) 사업의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성과의 우수성을 5대 핵심성과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배점 <input type="checkbox"/> (핵심 성과유형별 점수 배분) 주어진 총 점수(30점)를 사업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배분의 근거 제시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 각 성과유형에 해당하는 성과별 질적 우수성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input type="checkbox"/> (점수산출) 제시된 성과의 우수성, 핵심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성과유형별 점수: 성과유형별 배점 × 성과의 우수성 가중치 × 핵심성 가중치 × 근거자료의 타당성 인정 비율 ○ 최종점수: 성과유형별 점수의 총 합 [대표성과(20점)] <input type="checkbox"/> (대표성과소개서 작성) 5개 이내의 대표성과를 제시하고 대표성과별 소개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정성평가) 제시된 대표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대표성과별 점수: 성과의 탁월성 부여점수 × 핵심성 가중치 × 근거자료의 타당성 인정 비율 ○ 최종점수: 최고점을 받은 대표성과 점수
	종합적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는가?	20점	<input type="checkbox"/> 아래 표에 따라 판단

		<table border="1"> <tr> <td>답변</td> <td>매우 만족</td> <td>만족</td> <td>보통</td> <td>미흡</td> <td>매우 미흡</td> </tr> <tr> <td rowspan="2">기준</td> <td colspan="4">형식적 요건 충족</td> <td>미충족</td> </tr> <tr> <td>세부 판단기준 4개 모두 만족</td> <td>3개 만족</td> <td>2개 만족</td> <td>1개 만족</td> <td>-</td> </tr> <tr> <td>배점</td> <td>20</td> <td>15</td> <td>10</td> <td>5</td> <td>0</td> </tr> </table>					답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준	형식적 요건 충족				미충족	세부 판단기준 4개 모두 만족	3개 만족	2개 만족	1개 만족	-	배점	20	15	10	5	0
답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준	형식적 요건 충족				미충족																								
	세부 판단기준 4개 모두 만족	3개 만족	2개 만족	1개 만족	-																								
배점	20	15	10	5	0																								
			<input type="checkbox"/> 성과분석보고서의 형식적 요건 - 분석대상, 분석시점, 분석범위, 분석내용 <input type="checkbox"/> 세부 판단기준 ○ 사업의 효과성을 검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활용 여부 ○ 효과성 분석의 체계적 수행 및 분석 데이터의 합리적 사용 여부 ○ 사업의 결과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 ○ 종합적 성과분석 결과 사업 개선사항, 제언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가점	사업추진으로 인해 우수성과물이 존재하는가?	2점	<input type="checkbox"/>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또는 국제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이 존재하는 경우 ○ 1건당 1점, 최대 2점																										
	사업 성과지표의 일자리 지표 설정비중	1점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성과지표 중 일자리 관련지표들의 가중치 비중에 따라 배점 차등화 <table border="1"> <tr> <td>가중치%</td> <td>80~100</td> <td>60~80</td> <td>40~60</td> <td>20~40</td> <td>0~20</td> <td>0</td> </tr> <tr> <td>배점</td> <td>1.0</td> <td>0.8</td> <td>0.6</td> <td>0.4</td> <td>0.2</td> <td>0</td> </tr> </table>					가중치%	80~100	60~80	40~60	20~40	0~20	0	배점	1.0	0.8	0.6	0.4	0.2	0								
	가중치%	80~100	60~80	40~60	20~40	0~20	0																						
배점	1.0	0.8	0.6	0.4	0.2	0																							
평가대상사업의 과제평가 표준지침 이행도	2점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사업 내 과제의 질적 성과지표 비중의 평균치에 따라 가점 부여 <table border="1"> <tr> <td>평균치</td> <td>50% 이상</td> <td>30% 이상</td> <td>30%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td> <td>0.5</td> <td>0</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책임평가위원회 실시 과제의 비중 <table border="1"> <tr> <td>비율</td> <td>90% 이상</td> <td>75~90%</td> <td>75% 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td> <td>0.5</td> <td>0</td> </tr> </table>					평균치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1.0	0.5	0	비율	90% 이상	75~90%	75% 미만	배점	1.0	0.5	0							
평균치	5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배점	1.0	0.5	0																										
비율	90% 이상	75~90%	75% 미만																										
배점	1.0	0.5	0																										
감점	과거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였는가?	3점	<input type="checkbox"/> (예 0점) 과거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이 모두 마련되고 사업개선에 모두 반영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상당정도△1점) 과거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이 모두 마련되었으나, 사업에는 일부만 반영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어느정도△1점) 과거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이 일부만 마련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3점) 과거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추진체	1점	<input type="checkbox"/> 아래 표에 따라 판단																										

계를 구축하였는가?		<table border="1"> <tr> <th>답변</th> <th>예</th> <th>어느정도</th> <th>아니오</th> </tr> <tr> <th>기준</th> <td>판단기준 3개 모두 만족</td> <td>2개 만족</td> <td>1개 이하 만족</td> </tr> <tr> <th>배점</th> <td>0</td> <td>△0.5</td> <td>△1</td> </tr> </table>	답변	예	어느정도	아니오	기준	판단기준 3개 모두 만족	2개 만족	1개 이하 만족	배점	0	△0.5	△1
		답변	예	어느정도	아니오									
기준	판단기준 3개 모두 만족	2개 만족	1개 이하 만족											
배점	0	△0.5	△1											
과제 관리 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고 있는가?	1점	<p>□ 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목적 대비 부처 간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 간 성과 공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상호협력 등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분장 규정 및 정차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실제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실적 <p>□ 아래 표에 따라 판단</p> <table border="1"> <tr> <th>답변</th> <th>예</th> <th>아니오</th> </tr> <tr> <th>기준</th> <td>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td> <td>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td> </tr> <tr> <th>배점</th> <td>0</td> <td>△1</td> </tr> </table>	답변	예	아니오	기준	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배점	0	△1			
답변	예	아니오												
기준	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과제관리 과정에서 단순 논문건수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												
배점	0	△1												

□ 평가지표 구성방향

- 평가의 일관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정평위 개선 의견을 반영(여성대표성과 일가정 양립 구분, 취약계층 채용 등)한 평가지표 개발
- 조직·인사·정보화 담당부서 의견(과학적 조직관리, 주요 사회이슈, 새정부의 국정과제)을 종합 반영한 평가지표 배점 조정 및 신규지표 발굴

□ 주요 평가지표 개선안

- (조직) 조직관리정보시스템 구축(17년), 시스템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배점 조정
 - * (배점)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3점→5점)
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2점→5점)
 - * (신설) 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선택지표)
- (국민 소통·협업 → 정책품질)
 - * (삭제) ③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2)
 - * (개선) ④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
- (인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지표 발굴
 - * (신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4)
 - 장애인 채용 노력도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4)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노력도(△2)
 - *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은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지표에 통합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4)(선택→필수지표)
 - * (삭제) 본부 과장급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
 - * (삭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2)
- (정보화) 정보화사업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비중 확대(10점→13점) 및 평가 실효성이 낮은 지표 삭제
 - * (신설) 지능형정부 추진 노력(3)
 - * (삭제)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2)
클라우드 전환 도입실적,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률(선택지표)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2017년			2018년		
조직 (35)	정부조직 (18)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5) ②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관리 수준(2)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5)	조직 (35)	정부조직 (20)	①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5) ② 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수립(2) ③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5) -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2) - 정부조직정보시스템 이용률(3)
	선택	④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3)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3)		선택	④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5)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⑥ 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
	소통협업 (17)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5)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 ③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2) ④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5)		정책품질 (15)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5)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 ③ <삭제> ④ 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
인사 (30)	필수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6)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 노력도(3) - 초과근무 감축 실적(3)	인사 (30)	필수 (27)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11) -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 노력도(4)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4) - 초과근무 감축 실적(3)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2)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4.5)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2.5)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2)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 -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4.5) -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2.5)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5)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 -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2)	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4) - <삭제> - 장애인 채용 노력(4) *신설 -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노력도(△2) - <삭제>			
선택	① 상시학습 이수비율(3) ②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2) ③ 전문직위 지정 비율(2)	선택 (3)	① 상시학습 이수비율 <필수지표로 전환> ② 전문직위 지정 비율		
정보화 (35)	전자정부 (20)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0) - 자원 및 정보관리체계 마련 수준(3) - 정보화 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4) -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3)	정보화 (35)	전자정부 (20)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3) - 정보자원관리체계 마련 수준(3) - 정보화사업 성과관리(4) *보완 - 효율적 정보화 추진(3) *보완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3) *보완
		②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4)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2) -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4) -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 수준(0.8) -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3.2)
	③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2)	③ 삭제			
선택	④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도입 실적(2) 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률(2)	③ 지능형정부 추진 노력(3) *신규 - 지능정보기술의 활용(1) - 지능형정부 추진 노력(1) - 지능형정부 구현의 충실도(1)			
사이버 (15)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4)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사이버 (15)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4)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6) -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 -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1)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1)			

V. 자체평가 방법

V.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과제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및 주요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주요정책 소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의결

－ 주요정책 소위원회 : 자체평가 대상과제 분야별 평가

○ 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인 (민간 8인, 내부 2인)

－ 주요정책 소위원회 : 민간 위원 19인

※ 평가 내실화를 위해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민간위원)과 청내 과장급(내부위원)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며,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민간위원 70%, 내부위원 30%로 부여함

□ 세부절차

○ 자체평가자료 검토방법

－ (국·소속기관) 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 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평가총괄부서) 상·하반기 평가 개최 1~2주전에 관련 자료를 주요정책 소위원회에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 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각 성과목표·관리
과제별 소관 국·소속기관과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정책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총괄위원회) 소위원회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등급)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 적용
 - ※ (1등급) 상위 5% 이내, (2등급) 5% 초과~20% 이내, (3등급) 20% 초과~35% 이내,
(4등급) 35% 초과~65% 이내, (5등급) 65% 초과~80% 이내, (6등급) 80% 초과~
95% 이내, (7등급) 95% 초과
- (이의신청 및 확인) 평가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및 확인 절차 실시
 - ※ 평가결과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적합성 검토 → 검토
결과 통보 및 최종결과 확정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고) 국무조정실 및 해당 국회 상임위 제출
 - ※ 국무조정실에서 일괄하여 전 부처 대국민 공개

②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주 관	주 요 사 항
자체평가계획 수립	4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내 제1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국·소속기관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자체평가총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
		혁신행정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계획 설명회 - 주요 변경사항 공지
상반기 점검	6~8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평가실시 - 성과지표 난이도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내 제2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결과 검토
하반기 평가	9~10월	혁신행정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0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내 제3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하반기 주요성과 발표 및 의견수렴
	11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평가실시
종합점검	12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내 제4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18년도 성과관리 종합점검 (자체평가 부문별 성과 등 포함)
평가결과 확정	차년도 1~2월	혁신행정담당관실 자체평가총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년도 자체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검토 -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차년도 3월	혁신행정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자체평가결과 공개(기상청 홈페이지)

〈일반재정사업〉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검토, 평가지표 수립에 대한 심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확정을 위해 총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평가대상 선정, 평가지표 설정 → 평가수행 → 환류계획 마련 → 평가결과 제출
- 총괄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인 (민간 4인)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 ① 차관급 공무원(청단위는 차장급 공무원) 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 ②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1/2이상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자체평가 실시

- (평가대상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지표별 평정근거를 작성하여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대상부서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총괄위원회)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산출

- 총괄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3단계로 등급화
-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사업수	우수	보통	미흡
6	1	4	1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성과 관리 개선대책 중심의 환류계획 수립
 - * 환류계획은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를 통해 반기(필요시 분기)별로 환류계획 이행여부를 확인·점검

②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합동 설명회 개최(기재부)	'17.12.22.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통보(기재부)	'18.1.2.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세부계획 수립(기상청)	2.22.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 심의·의결(기상청)	3.22.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실시(기상청)	4월 초순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 접수(기상청)	4월 중순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심의·확정(기상청)	4월 중순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제출(기상청→기재부)	4.30.
○ 20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5.20.

〈재난안전사업〉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재난안전사업 성과보고서 검토,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 심의·확정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한 민간위원 5인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 위원 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선정 기준

-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 ②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 ③ 대학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전문가
 - ④ 해당 분야 기업의 부서장급 이상 전문가
 - ⑤ 그 밖에 재난·안전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단,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위원 제외 기준

-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 ② 평가대상사업의 현재('17.1.1~'18.3.31) 과제책임자
- ③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④ 행안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용역 기관의 임직원
- ⑤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자체평가 실시

- (평가대상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지표별 평정근거를 작성하여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대상 부서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산출

-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 3단계로 등급화
- 상대평가 비율은 우수 20%, 보통 65%, 미흡 15%

사업수	우수	보통	미흡
15	3	10	2

□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 수립
 - '미흡' 등급의 사업은 의무적으로 성과관리개선대책 수립

* 성과관리개선대책의 이행 실적은 '19년 평가시 행안부에서 확인·점검 예정

②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설명회 개최(행안부)	'18.1.16.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계획 및 1차 평가 지침 통보(행안부)	1.26.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세부계획 수립(기상청)	2.22.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실시(기상청)	3.12.~3.16.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이의신청 접수(기상청)	3.23.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심의·확정(기상청)	3.28.~3.29.
○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자체평가 결과 제출(기상청→행안부)	3.30.
○ 메타평가 실시(행안부)	4.2.~4.18.
○ 메타평가 결과 부처 의견 수렴(행안부)	4.19.~4.23.
○ 우수사업 선정 및 평가 결과 통보(행안부)	4.30.

〈R&D 평가〉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위원회

- (역할) 자체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수행
 -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 및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자문
 - 전문가 그룹의 성과 우수성 사전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성과 평가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토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5인
 - 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 산학연, 여성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포함

○ 전문가 그룹

- (역할) 자체평가대상 사업의 성과 우수성 사전 검토
 - 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전문가 그룹의 검토 내용을 총괄위원회에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
- (구성) 기술 분야 전문가 6인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2개 그룹별(기상지진, 기후) 전문가 3인으로 구성
- (사전검토 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검토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 ②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 ④ 해당 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 전문가

<자체평가위원 제외 기준>

-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 ② 평가대상사업의 현재('17.1.1.~'18.3.31.) 과제책임자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17.1.1.~'18.3.31.)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
- ④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⑤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
-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자체평가자료 제출 및 검토

- (평가대상 사업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및 근거자료를 작성 및 준비하여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 지침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근거자료 검토

□ 자체평가 실시

- 전문가 그룹에서 평가 대상사업의 성과 우수성 및 대표성과 우수성 사전 검토
- 1차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성과 우수성에 대한 전문가 그룹 사전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성과를 서면으로 평가
- 2차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사항 검토 및 최종 점수 확정

- 평가항목별 점수를 종합한 뒤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

2 자체평가 추진일정

일정	평가단계	추진 내용 및 세부 활동
~ '18. 1. 12.	계획 수립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일정
~ '18. 2. 5.	사업별 평가자료 제출	○ 평가대상 사업별 근거자료 등 평가자료 준비 및 제출
'18. 2. 6.~2. 18.	평가자료 검토	○ 사업별 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 검토
'18. 2. 19.~2. 23.	전문가 그룹 검토	○ 사업별 '성과 우수성' 서면 검토
'18. 2. 24.~3. 4.	평가보고서 보완	○ 전문가 그룹 검토 의견 반영
'18. 3. 5.~3. 9.	1차 자체평가위원회	○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
'18. 3. 13.~3. 16.	소명기회 부여	○ 1차 평가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의신청 접수
'18. 3. 21.	2차 자체평가위원회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 종합 심의·의결
'18. 3. 27.	평가결과 알림	○ 이의신청 최종 검토 결과 알림
'18. 3. 30.	평가결과 제출	○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1] 자체평가 방법

□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4인으로 소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자료 제출 및 검토

- (인사·조직·정보화) 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 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계획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소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시간 부여

□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 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
 - 지표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 확정

②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계획 확정	'18. 5월
○ 2018년도 상반기 행정관리역량 자체점검 실시	'18. 7월
○ 2018년도 하반기 행정관리역량 자체점검 실시	'18. 12월
○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개최, 평가 실시	'19. 1월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심의·의결 (자체평가총괄위원회 확정)	'19. 1월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보고서 및 실태점검 결과 제출	'19. 1월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VI.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전략 및 조직, 인사 관리방안 마련 등 환류제도 운영
- 성과 보상제도 운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 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내부 국·소속기관 평가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반영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을 심층진단(정책, 인력, 조직 차원 등)하여,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전략 마련
-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 정책추진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평가 시 개선 제안사항은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평가지표에 개선정도를 포함

□ 예산부문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우선순위 및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등에 반영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부문

- 기능 재설계 등 조직·인력 운영방안과 연계 추진
 - 중기인력 운영계획, 조직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 미흡 기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재배정
 - 통합정원 등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시 효율화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포상

-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도약기관, 우수기여자 등 포상

□ 성과급

-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

4

평가결과의 공유·확산 방안

- 평가결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기관장(또는 부서장) 주재 성과보고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결과 전파
- 성과관리 교육강화로 정부업무평가 정착
 - 순회교육, 설명회, 운영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성과관리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5

평가결과의 공개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구분	공개시기	방 법
'18년도 자체평가 계획	'18. 4.	기상청 홈페이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18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정	'18. 9.	"
'18년도 자체평가 결과	'19. 3.	"

[별첨]

2017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I . 주요정책

1. 평가대상

○ 총 21개 국·소속기관, 34개 관리과제

※ 국·소속기관별 소관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종합 평가

2. 평가지표 체계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주요 정책 (100점)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과거 성과추세, 전년도 실적수준, 벤치마킹 대상기관의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적용 적극성 - 사업추진 여건 변화, 사업방식 변화 등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성 반영 적절성 - 목표치가 직전연도 실적과 최근 3년 평균 실적 중 최대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상향됨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전년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 계획 추진 상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집행 (25점)	추진일정 충실성 (7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성과지표 달성도 (10.5점)		○ 정량평가 - 성과목표 지표 또는 대표지표(난이도 평가대상) 달성도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적 대응성 (7.5점)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점)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과제수행 주요성과,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점)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6점)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 업무발전계획)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6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점)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 통한 기대효과 제시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계획단계(35점)

평가지표	1-1.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6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상위 전략을 기준으로,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배점 3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B. 관리과제의 구성의 적절성 (배점 3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관리과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 관리과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성적 판단 <p>B. 관리과제의 구성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과제의 세부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과 관리과제·주요업무 등에 관한 자료																				

평가지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성과목표, 관리과제) (6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배점 3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421 1385 517">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배점 1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577 1385 674">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배점 2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734 1385 831">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는 별도 실시</p>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과제의 추진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p> <p>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성과지표의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p> <p>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p>																														
평가근거/ 자료	○ 피평가 대상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평가지표	1-3.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성과목표, 관리과제) (5점)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적극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5점, • 중 : 4.5점 , • 하 : 4점
측정기준	<p>【판단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성과추세, 전년도 실적수준, 벤치마킹 대상기관의 수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적용 적극성 - 사업추진 여건 변화, 사업방식 변화 등 성과제고를 위한 혁신성 반영 적절성 - 목표치가 직전연도 실적과 최근 3년 평균 실적 중 최대값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여 상향 반영 여부
평가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평가 대상의 성과지표 목표치 도출근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 (성과지표정의서 등)

평가지표	1-4.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배점 2.5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459 1385 555">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배점 2.5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611 1385 707">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STLE 분석을 통한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통계현황자료 및 시사점 분석 유무 ▪ 기타 객관적 사전조사 실적 유무 <p>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평가지표	1-5. 현장 의견수렴의 적절성 (5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3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398 1385 495">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2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551 1385 647">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등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 충실도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현장)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 국민·공무원 제안 등 기타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p>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언론, 감사 의견 반영 실적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 실적 																				
평가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평가지표	1-6. 계획의 충실성 (8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8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506 1382 600">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유무 ▪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 계획 발굴 ▪ 객관적 정책분석 방식의 적용 유무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한 대비책 제시 유무 										
평가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2) 집행단계 (25점)

<p>평가지표</p>	<p>2-1. 추진일정의 충실성 (7점)</p>
<p>측정방법</p>	<p>○ 관리과제 상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p> <p>-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 = (추진건수 × 100) / 추진계획건수</p> <p>- 최종점수 = 7점 × 추진계획일정준수율</p>
<p>측정기준</p>	<p>○ 제시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p> <p>○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이 미 준수가 되었을 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판단으로 재평가</p> <p>- (평가총괄부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가능여부 판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외생적 요인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변화에 의한 지연 ▪ 사회적으로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최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통·폐합 등으로 인한 지연 </div>
<p>평가근거/자료</p>	<p>○ 추진계획 대비 실적 자료</p>

평가지표	2-2. 성과지표 달성도 (10.5점)
측정방법	<p>○ <u>성과목표(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달성도 (6.5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6.5점) × 성과지표달성도 × 성과지표난이도 가중치 <p>○ <u>관리과제 성과지표달성도 (4점)</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4점) × 성과지표달성도
측정기준	○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평가근거/ 자료	○ 실적 자료

평가지표	2-3. 전략적 대응성 (7.5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3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405 1382 499">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평가수준 B.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4.5점)</p> <table border="1" data-bbox="411 595 1382 689">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내용의 충실성 ▪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한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p>B. 도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실적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유무 ▪ 객관적 대응실적 유무 ▪ 대응실적에 따른 효과발생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대응성에 대한 객관적 실적 자료 																				

(3) 성과 및 환류단계 (40점)

평가지표	3-1.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점)																				
측정방법	<p>평가수준 A. 목표한 성과의 발생여부(7.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평가수준 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주요활동 및 성과(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평가지표 A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목표한 성과발생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효과 등 ▪ 외부 및 내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p>(예시: 이해관계자, 정책현장 및 고객, 대국민 등의 인지도 변화)</p> <p>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활동 및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 형식으로 내용(1page 이내)을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실적 자료 ○ 주요 활동 및 성과 요약자료 																				

평가지표	3-2.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점)										
측정방법	<p>○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p> <table border="1" data-bbox="411 526 1380 622">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p>										
평가근거/ 자료	○ -										

평가지표	3-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6점)										
측정방법	<p>○ 과제수행을 통해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 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대한 기여여부</p> <table border="1" data-bbox="411 566 1385 663">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 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4. 향후 기대효과 (6점)										
측정방법	<p>○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p> <table border="1" data-bbox="411 526 1385 622"> <thead> <tr> <th>S</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head> <tbody>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body> </table> <p>※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p>										
평가근거/자료	○ -										

평가지표	3-5.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점)
------	----------------------------------

측정방법	<p>A. 성과의 원인분석의 충실성(4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5.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r> <td>5.0~4.1</td> <td>4.0~3.1</td> <td>3.0~2.1</td> <td>2.0~1.1</td> <td>1.0~0</td> </tr> </table> <p>※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p>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측정기준	<p>【판단기준】</p> <p>A. 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된 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p>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방안 마련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평가근거/자료	○ 실적 자료
---------	---------

II. 재정사업

<일반재정사업>

< 자체평가 지표(안) >

단계	평가항목	평 가지 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20
계			100
가점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집행률·효율성 제고 노력	5
	(정 보 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서비스 혁신 성과 및 집행률 제고 노력	5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집행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input type="checkbox"/>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측정기준	<p>① 집행실적</p> <p>가. 평가 당해연도 집행률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p> <p>※ 외부요인에 의한 불용 및 이월액, 낙찰차액,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하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경우에 한함</p> <p>①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현액 집행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p> <p>* 사업비 현액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p> <p>② 실집행률(%) = $\frac{\text{출연사업비 집행실적}}{\text{출연사업비}^*} \times 100$</p> <p>* 출연사업비는 '기상산업 진흥' 사업의 출연금만 해당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p>② 최종 점수 산정</p> <p>가. 최종점수* = 집행률(실집행률)** × 0.3(환산지수)</p> <p>* 최종점수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28.64 ≒ 28.6)</p> <p>** 집행률(실집행률) :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95.455 ≒ 95.46)</p>
평가근거 /자료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input type="checkbox"/>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입찰 자료 등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p>평가지표</p>	<p>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점)</p>
<p>측정방법</p>	<p>□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p>※ 목표달성 실적이 출처기관의 실제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5점 감점</p> <p>※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대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점수 산정</p>
<p>측정기준</p>	<p>① 목표의 적극성</p> <p>가. 목표가 매우 적극적인 경우(매우적극, 50점 만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5%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p>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인 경우,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p> <p>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가 아닌 경우, 성과보고서상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5%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적시)

나. 목표가 적극적인 경우(적극, 48점 만점)

-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3%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 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로서,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 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이전 3년 달성 실적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3%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적시)

다. 목표의 적극성이 보통인 경우(보통, 46점 만점)

-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3% 미만으로 향상된 목표를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을 보통으로 산정
- ※ 신규지표는 해당 신규지표 기준 과거 3년 통계 등으로 판단, 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
- ※ 외부요인(예산증가 등)으로 성과목표가 증가한 경우, 외부변화비율(ex 예산증가율) 대비 목표지표 증가율로 판단

② 목표달성률

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률(%) = $\frac{\text{성과지표달성실적}}{\text{성과지표(만점)}} \times 100$

-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되는 근거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반드시 기입

※ 외부 요인에 의해 목표달성률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3점 이내에서 가·감점 가능

③ 최종점수 산정

가.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

나.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출(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산출 예시

○ 예시 1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50	51.5	적극(48)	90	0.4
B	100	105	매우적극(50)	85	0.2
C	20	22	매우적극(50)	100	0.2(삭감)
D (만족도)	90	99	보통(46)	100	0.2

$$- \text{최종점수} = 48 \times 0.9 \times 0.4 + 50 \times 0.85 \times 0.2 + 50 \times 1 \times 0.1 + 46 \times 1 \times 0.2 = 39.98 \rightarrow 40\text{점}$$

○ 예시 2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80	84	매우적극	80	0.3
B	100	110	매우적극	100	0.3
C	10	10	보통	70	0.2
D (만족도)	80	84	보통	80	0.2(삭감)

$$- \text{최종점수} = 50 \times 0.8 \times 0.3 + 50 \times 1 \times 0.3 + 46 \times 0.7 \times 0.2 + 46 \times 0.8 \times 0.1 = 34.12 \rightarrow 34\text{점}$$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7년도 수정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외부기관 평가와 이에 대한 자체평가 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9	10~14	15~19	20

측정기준

㉠ ‘예’ 판단 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20점)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 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실시한 사업 평가·성과분석보고서(지역사업)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2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인정

** 사업관련 내용으로 국제단위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수상실적으로도 우수성 인정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7점)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보고서, 기재부 심층평가, 사업시행주체가 아닌 독립된 제3자가 실시한 사업 평가·성과분석보고서 등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1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 중 50% 이상이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인정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 제3자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내외의 가감 가능(15~19점)

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2점)

가. 외부기관을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제3자 평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 해당 단위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평가 주체가 산하기관 등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제3자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내외의 가감 가능(10~14점)

④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7점)

가. 제3자로부터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적하고('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적시된 지적내용),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내외의 가감 가능(5~9점)

※ 기타 성과우수성 인정 예시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 주요 학술지, 외부 연구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에서 사업 성과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 주요 언론사의 평가 : 주요 신문사 가판 및 지상파·공중파 뉴스에서 성과우수성을 인정

* 외부 수상 실적 : 시민단체 및 협회 등에서 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포상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사업성과의 우수성 입증 자료(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보고서)
- 외부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여부

- 검증 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불인정
-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 기관 평가 또는 일부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평가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실시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부처 내부의 독립된 평가 부서 등 사업담당자 이외의 자가 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객관성 인정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인지 여부

- 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정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 및 분석방법을 통해 입증한 경우

첨 부**사업의 성과 우수성 점검사항 (예시)**

- 사업이 의도한 효과(성과) 확인을 위해 성과지표의 활용 외에 사업평가 실시
- 해당 사업 여건(예산, 사업 전후의 자료,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후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계속사업의 경우 적어도 3년에 한번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사업시행의 정당성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3) 가점

<p>평가지표</p>	<p>(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집행률·효율성 제고 노력(가점 5점)</p>
<p>측정방법</p>	<p><input type="checkbox"/>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 하였는지 확인</p>
<p>측정기준</p>	<p><input type="checkbox"/>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판단 기준(가점 3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3점 부여, 최근 2년 이내 실적)</p> <p>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p> <p>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 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p> <p>* 사업효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측정되어야 함</p> <p>*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p> <p>나. 예산 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집행률 제고 노력 판단 기준(2점)</p> <p>가. 집행률 제고 노력 및 집행률이 꾸준히 상승한 경우</p> <p>○ 집행률 제고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1점)</p> <p>○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거나 집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2.5% 이상인 경우(1점)</p>
<p>평가근거/ 자료</p>	<p><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p> <p><input type="checkbox"/>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p> <p><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예산집행현황 자료</p>

<p>평가지표</p>	<p>(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및 집행률 제고 노력 (가점 5점)</p>
<p>측정방법</p>	<p>□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p>
<p>측정기준</p>	<p>□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판단 기준(가점3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3점 부여, 최근 2년 이내 실적)</p> <p>가.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를 비용절감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p> <p>예)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활용이 낮거나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경우</p> <p>나. 정보화사업을 통해 내부 행정업무 및 외부 대민서비스 개선, 국제협력관계 제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행정업무 개선 : 업무절차 개선, 정보연계·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예) 대민서비스 개선 : 소득증대, 정보격차해소, 절차단축, 신규 수혜자 발굴 등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 편익 증진 <p>※ 정보시스템이 수반되지 않는 정보화사업(국제협력, 지원사업 등)의 경우, '나'항목에 답변</p> <p>□ 집행률 제고 노력 판단 기준(2점)</p> <p>가. 집행률 제고 노력 및 집행률이 꾸준히 상승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률 제고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1점)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매년 1.5% 이상 증가하거나 집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이 2.5% 이상인 경우(1점)
<p>평가근거/ 자료</p>	<p>□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비용절감 관련 자료</p> <p>□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객관적 실적 자료</p> <p>□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예산집행현황 자료</p>

〈재난안전사업〉

< 자체평가 지표 >

단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관리	사업 관리의 적절성	○ (1-1)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 사업목표-내용 연계성, 일정 준수	30
결과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 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등	50
		○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 재난·사고 예방 및 저감 성과, 자체평가 위원회 검토 결과 등	20
계			100
가점	(재난안전)	○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4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30점)																										
측정방법	<p>□ 집행실적,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사업 관리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p> <p>○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1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답변</th> <th>“아니요”</th> <th>“어느 정도”</th> <th>“상당한 정도”</th> <th>“예”</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6 ~ 8</td> <td>9 ~ 11</td> <td>12 ~ 14</td> <td>15</td> </tr> </tbody> </table> <p>○ 사업 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 (10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답변</th> <th>“아니요”</th> <th>“어느 정도”</th> <th>“예”</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4 ~ 6</td> <td>7 ~ 9</td> <td>10</td> </tr> </tbody> </table> <p>○ 계획대비 추진일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답변</th> <th>“아니요”</th> <th>“어느 정도”</th> <th>“예”</th> </tr> </thead> <tbody> <tr> <td>배점</td> <td>1 ~ 2</td> <td>3 ~ 4</td> <td>5</td> </tr> </tbody> </table>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6 ~ 8	9 ~ 11	12 ~ 14	1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4 ~ 6	7 ~ 9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1 ~ 2	3 ~ 4	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6 ~ 8	9 ~ 11	12 ~ 14	15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4 ~ 6	7 ~ 9	10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1 ~ 2	3 ~ 4	5																								
측정기준	<p>【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15점)</p> <p>① ‘예’ 판단 기준 (15점)</p> <p>가. 매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 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 (기본배점 13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나.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7년 집행률이 95%(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기본배점 10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실집행 60~85%) 수준인 경우
나.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어 '17년 집행률이 85%(실집행 75%) 이상인 경우
다.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④ '아니요' 판단 기준 (기본배점 7점)

-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 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7년 집행률이 70%(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 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 사유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처리
 -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사업목표-내용 연계성】 (10점)

① '예' 판단 기준 (10점)

- 가.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의 달성에 직접 연계된 경우
 -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
 - **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구성의 타당성 등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기본배점 8점)

- 가.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의 달성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
 - ※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③ '아니오' 판단 기준 (기본배점 5점)

- 가.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의 달성과 연계성이 낮은 경우
※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계획대비 추진일정 준수 정도】 (5점)

① '예' 판단 기준 (5점)

- 가. 사업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따라 100% 수행된 경우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기본배점 3점)

- 가. 사업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따라 80%이상 수행된 경우
※ 추진일정 준수 노력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점 부여 가능

③ '아니오' 판단 기준 (기본배점 1점)

- 가. 사업이 계획한 추진일정에 따라 80% 미만 수행된 경우
※ 추진일정 준수 노력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한도 내 가점 부여 가능

※ 추진일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가 합리적이고 명확할 것

평가근거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예산요구서, 예산 설명자료, 사업기획보고서 등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과제관리 보고서,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등 당초 추진계획 및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textcircled{1} \text{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현액 집행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

* 사업비 현액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textcircled{2} \text{ 실집행률(\%)} = \frac{\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실적}}{\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times 100$$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5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30-01,03),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20-01,07)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 경상(자본)보조 : 기초자치단체(민간)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에서 실행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③ 분기별 집행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계획 및 실적 기준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50점)																																																																							
측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사전에 확정된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 확인 ※ 행정안전부에서 '17년 재난안전사업 성과목표·지표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확정 <input type="checkbox"/>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 목표달성 실적이 출처기관의 실제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5점 감점																																																																							
측정기준	<input type="checkbox"/> 아래 표에 따라 목표 달성도 산출 < '17년 목표 달성도 점수 산출 예시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h>성과지표 ①</th> <th>지표유형 ②</th> <th>지표 가중치 ③</th> <th>목표치 ④</th> <th>달성치 ⑤</th> <th>달성율 ⑥</th> <th>성과목표 ·지표 적절성⑦</th> <th>지표별 점수 ⑧</th> <th>점수 합계 ⑨</th> </tr> </thead> <tbody> <tr> <td>지표명</td> <td></td> <td>0.35</td> <td>100</td> <td>110</td> <td>100%</td> <td>1</td> <td>17.5</td> <td rowspan="5" style="background-color: #f4b084;">37</td> </tr> <tr> <td>지표명</td> <td></td> <td>0.25</td> <td>150</td> <td>113</td> <td>75.3%</td> <td>1</td> <td>9.4</td> </tr> <tr> <td>지표명</td> <td></td> <td>0.2</td> <td>20</td> <td>18</td> <td>90.0%</td> <td>0.5</td> <td>4.5</td> </tr> <tr> <td>지표명</td> <td></td> <td>0.1</td> <td>1500</td> <td>1800</td> <td>100%</td> <td>1</td> <td>5</td> </tr> <tr> <td>지표명</td> <td></td> <td>0.1</td> <td>6</td> <td>2</td> <td>33.3%</td> <td>0.5</td> <td>0.8</td> </tr> <tr> <td>계</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① 성과지표: 행안부 사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명 기재 ※ '17년 성과목표·지표의 점검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성과목표·지표는 불인정</p> <p>② 지표 유형: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중 1개 기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투입지표</td> <td style="width: 45%;">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td> <td style="width: 40%;">예시) 예산집행률</td> </tr> <tr> <td>과정지표</td> <td>사업진행상황, 진행과정상 산출물</td> <td>예시) 공정률, 진도율</td> </tr> <tr> <td>산출지표</td> <td>투입/과정을 통한 1차 산출물</td> <td>예시) 교육수료자수, 점검개수</td> </tr> <tr> <td>결과지표</td> <td>사업이 당초 의도한 최종효과</td> <td>예시) 사고발생 건수 감소율</td> </tr> </table> <p>③ 지표 가중치: 사전 성과목표·지표의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 기재</p> <p>④ 목표치: 사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기재</p> <p>⑤ 달성치: 성과지표의 실제 달성치를 기재</p>	성과지표 ①	지표유형 ②	지표 가중치 ③	목표치 ④	달성치 ⑤	달성율 ⑥	성과목표 ·지표 적절성⑦	지표별 점수 ⑧	점수 합계 ⑨	지표명		0.35	100	110	100%	1	17.5	37	지표명		0.25	150	113	75.3%	1	9.4	지표명		0.2	20	18	90.0%	0.5	4.5	지표명		0.1	1500	1800	100%	1	5	지표명		0.1	6	2	33.3%	0.5	0.8	계		1							투입지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	예시) 예산집행률	과정지표	사업진행상황, 진행과정상 산출물	예시) 공정률, 진도율	산출지표	투입/과정을 통한 1차 산출물	예시) 교육수료자수, 점검개수	결과지표	사업이 당초 의도한 최종효과	예시) 사고발생 건수 감소율
성과지표 ①	지표유형 ②	지표 가중치 ③	목표치 ④	달성치 ⑤	달성율 ⑥	성과목표 ·지표 적절성⑦	지표별 점수 ⑧	점수 합계 ⑨																																																																
지표명		0.35	100	110	100%	1	17.5	37																																																																
지표명		0.25	150	113	75.3%	1	9.4																																																																	
지표명		0.2	20	18	90.0%	0.5	4.5																																																																	
지표명		0.1	1500	1800	100%	1	5																																																																	
지표명		0.1	6	2	33.3%	0.5	0.8																																																																	
계		1																																																																						
투입지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종류의 자원	예시) 예산집행률																																																																						
과정지표	사업진행상황, 진행과정상 산출물	예시) 공정률, 진도율																																																																						
산출지표	투입/과정을 통한 1차 산출물	예시) 교육수료자수, 점검개수																																																																						
결과지표	사업이 당초 의도한 최종효과	예시) 사고발생 건수 감소율																																																																						

⑥ 달성률 : (달성치 / 목표치) X 100

*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표시

⑦ 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 :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작성

< 성과목표·지표의 적정성 >

기준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성과목표·지표 검토 결과 수정·보완 필요가 없었을 경우 ▶ '17년 성과목표·지표 검토 결과 수정·보완 필요가 있었으나, 의도·목적에 맞게 수정되었을 경우 * 사업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검토의견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성과목표·지표 검토 결과 수정·보완 필요가 있었으나, 의도·목적에 맞게 일부만 수정되었을 경우 * 사업의 내용,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검토의견에 따라 수정·보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성과목표·지표 검토 결과 수정·보완 필요가 있었으나, 반영·수정하지 않은 경우 	0.5

* 행정안전부의 '17년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와 연계

⑧ 지표별 점수 : 50점 X ③지표 가중치 X ⑥달성율 X ⑦성과목표·지표 적절성

⑨ 점수 합계 : 각 성과지표의 지표별 점수 합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②지표유형의 반 이상이 결과지표일 경우 점수합계에서 1점 가점 부여
(‘반 이상’ 판단은 가중치 기준)

※ 달성도 허위 보고나 데이터 조작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 시 메타평가에서 ‘자체평가위원회 부실 구성·운영’으로 감점 요인

평가근거
/자료

성과목표·지표 최종 점검 결과

성과지표 당해연도 달성치 자료, 성과달성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저감 효과, 기타 공익 증진효과 등 사업성과의 우수성 평가
- 객관적인 증빙 자료 (외부기관 평가, 전문보고서, 구체적 통계데이터, 여론조사, 언론 분석 등)를 통해 측정된 사업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5 ~ 9	10 ~ 14	15 ~ 19	20

측정기준

Ⅰ ‘예’ 판단 기준(아래 기준 모두 충족, 20점)

-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2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 사업관련 내용으로 국제단위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수상실적으로도 우수성 인정
 -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시 피해저감 효과)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②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7점)

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1회 이상 인정받은 경우(최근 2년 이내 실적)

*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또는 사업 성과의 우수성을 성과지표 달성여부로만 입증한 경우는 불인정

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동사업의 성과가 상위목표(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발생 시 피해저감 효과)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실이 타당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

※ 제3자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2점)

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 받았으나, 자체평가위원회로부터 제3자 평가의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의 성과측정 등 사업평가 방법론이 미흡하거나 성과지표 달성여부로 사업의 우수성을 판단한 경우

▲ 사업평가 방법론은 적절하나, 평가 주체가 산하기관 등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제3자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④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7점)

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업의 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

나. 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예결위·예산정책처에서 해당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적하고('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적시된 지적내용),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2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가능

※ 기타 성과우수성 인정 예시

* 학계 및 전문가 의견 : 주요 학술지, 외부 연구 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에서 사업 성과우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 주요 언론사의 평가 : 주요 신문사 지면 및 지상파·공중파 뉴스에서 성과우수성을 인정

* 외부 수상 실적 : 시민단체 및 협회 등에서 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포상한 경우 등

평가근거
/자료

- 사업 성과의 우수성 입증 자료(외부기관 및 사업평가보고서)
- 외부지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 실시 여부

- 검증 가능한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가 심층적으로 수행된 경우
 - 원점에서 사업의 존속여부 및 사업추진방식의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경우
 -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은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불인정
- 대상사업 전체를 평가범위로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평가는 인정
 - 기관 평가 또는 일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평가한 경우는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평가가 객관적인 주체에 의해 실시된 경우
 - 외부기관 또는 부처 내부의 독립된 평가 부서 등 사업담당자 이외의 자가 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객관성 인정

□ 사업 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인지 여부

- 해당 사업으로 인해 특정문제해결 또는 개선 등의 변화 (재난안전사고 예방효과, 피해저감 효과 등) 가 나타났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 및 분석방법을 통해 입증한 경우

첨 부**사업의 성과 우수성 점검사항 (예시)**

- 사업이 의도한 효과(성과) 확인을 위해 성과지표의 활용 외에 사업평가 실시
- 해당 사업 여건(예산, 사업 전후의 자료, 사업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준)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 시행 전·후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계속사업의 경우 적어도 3년에 한번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
-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항 목	내 용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사업전달체계 : 사업주체, 직접적·간접적 대상 등 • 사업예산 • 유사사업(해외사례 포함)
주요쟁점과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 사업시행의 정당성 • 주요 쟁점 • 평가의 목적 및 범위
사업의 효과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와 비교기준 • 평가모형 • 자료분석 결과
사업의 운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정책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3) 가점

<p>평가지표</p>	<p>(재난안전) 재난·안전관리 정책적 중요도 (가점 4점)</p>
<p>측정방법</p>	<p>□ 국정과제, 국가안전관리 기본(집행)계획,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계획에 해당하거나 사회적 이슈 정도, 안전체감도 등의 결과에 따라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p>
<p>측정기준</p>	<p>① '매우 중요' 판단 기준 (아래기준 모두 충족 4점)</p> <p>가. 국정과제, 국가안전관리 기본(집행)계획,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계획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국민 만족도 및 안전체감도, 여론조사 (최근 2년 이내) 결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p> <p>② '중요' 판단 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본 배점 2점)</p> <p>가. 국정과제, 국가안전관리 기본(집행)계획,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계획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국민 만족도 및 안전체감도, 여론조사 (최근 2년 이내) 결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p> <p>※ 여러 계획에 중첩되어 있거나 사회적 이슈 정도에 따라 1점 한도 내 가감점 부여 (1~3점)</p> <p>③ '아니요' 판단 기준(아래 기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p> <p>가. 국정과제, 국가안전관리 기본(집행)계획, 국가/범부처 수준의 중·단기 계획의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경우</p> <p>나. 국민 만족도 및 안전체감도, 여론조사 (최근 2년 이내) 결과 정책적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 경우</p>
<p>평가근거/자료</p>	<p>□ 상위 정책, 조사결과 등</p>

〈R&D 평가〉

1. 평가대상

- 전체 연구개발 대상사업 중 3년 평가주기 도래 사업

2.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 [목표 달성도]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0점)

■ 배점기준

-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성과지표 ①	지표 가중치 ②	목표치 ③	달성치 ④	달성률 ⑤	성과지표 가중치 ⑥	지표별 점수 ⑦	최종점수 ⑧
지표명	0.35	100	110	100%	1	10.5	22.1
지표명	0.25	150	103	68.7%	1	5.2	
지표명	0.2	20	18	90.0%	0.5	2.7	
지표명	0.1	1500	1800	100%	1	3	
지표명	0.1	6	3	50.0%	0.5	0.8	
계	1						

■ 작성요령

- ① 성과지표 :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합의된 성과지표명을 그대로 기재
- ② 지표 가중치 :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합의된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그대로 기재
- ③ 목표치 :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합의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그대로 기재
- ④ 달성치 : 성과지표의 실제 달성치를 기재
- ⑤ 달성률 : (달성치 / 목표치) X 100
 - *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표시
 - * 도전적 목표치 설정 사업의 경우, 달성률에 가중치 1.5를 적용(예를 들어 달성률이 70% 이상인 경우 가중치 1.5로 가하여 100% 이상 달성으로 간주) 단,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에서 도전적 목표치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⑥ 성과지표 가중치 : <성과지표 적절성>를 참고하여 작성
 - * 2017년 성과목표지표 점검에서 부적절 판정된 지표는 성과의 절반(0.5)만 인정

<성과지표 적절성>

기준	가중치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판정된 경우	1.0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되었거나 사전에 합의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0.5

⑦ 지표별 점수 : 총 배점(일반 30, 시설 40) X 지표 가중치 X 달성률
X 성과지표 가중치

⑧ 최종 점수 : 각 지표의 지표별 점수를 합산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첫째 자리까지 표시)

* 2017년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 기본사항 및 성과목표가 부적절한 경우 해당 지표별 점수의 10%를 불인정 (최종 점수 X 가중치 0.9)

<최종 배점에 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 반영>

기준	가중치	점수
기본사항 또는 성과목표 부적절	0.9	⑧×0.9

■ 준수사항

- 각 성과지표별 최종점수는 사업유형별 배점, 지표 가중치, 달성률, 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
- 9대 성과물*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문기관에 등록된 성과만을 인정하며, 성과지표로 설정된 성과의 증빙자료는 관리기관 등록증으로 통일
 -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S/W, 연구시설·장비, 신제품
- 자체평가 시 제출된 성과만 인정하며, 상위평가 시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 하더라도 자체평가에 제시된 성과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근거자료

- 성과지표 과거 실적치 및 당해연도 달성치 자료, 성과달성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 [성과 우수성1] 성과분야별 사업의 성과 및 대표성과는 우수한가? (50점)

■ 배점기준

- 연구 종합성과의 우수성 및 대표성과의 우수성 관점에서 성과를 구분하여 정성 평가에 의한 점수 부여
- 성과 우수성은 ‘종합적 연구성과’와 ‘대표성과’ 항목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는 평가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실시
 - 성과 우수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평가 위원에게 제공 필요
 - ※ (성과분석 자료 예시) 논문 성과는 과거 3년간의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값을, 특허 성과는 과거 3년간의 SMART/K-PEG 분석 값, 최근 3년(2년)간 창출된 성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 등

■ 판단기준

【종합적 연구성과 (30점)】

- (핵심 성과유형의 결정) 사업의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성과의 우수성을 5대 핵심성과유형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배점
 - 대상성과는 3년('15~'17년) 기간에 해당되는 성과를 제시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등 5대 핵심 성과유형을 선택(성과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2014. 12)의 부록 1. 「5대 분야별 성과지표」를 참조)
 - 5대 핵심 성과유형 중 사업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2개 이상의 성과유형을 선택
- (핵심 성과유형별 점수 배분) 주어진 총 점수(30점)를 사업 특성에 맞게 배분하고 배분의 근거를 반드시 제시
 - 5대 핵심 성과유형 중 특정 유형에 배분 할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원칙적으로 전체 배점의 70% 이하 인정. 70% 초과는 불인정
 - * (불인정 예) 자체평가 시 종합적 연구성과 평가 시 총 27점(과학적 성과 22점, 경제적 성과 5점)으로 배점 시, 과학적 성과에 배점한 22점이 전체 배점(30점)의 70%인 21점을 초과하므로, 과학적 성과를 전체 배점의 최대인 21점으로 평가함
 - 사업유형 및 기간별 5대 핵심성과 유형은 아래의 표를 참조

<R&D 사업 유형 및 기간에 따른 5대 핵심 성과유형 >

사업유형 / 기간	초기 (Output)	중기 (Short-term Outcome)	장기 (Long-term Outcome)
1. 기초연구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2. 단기산업기술개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3. 중장기산업기술개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4. 공공기술개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5. 지역연구개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6. 국방기술개발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7. 인력양성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8. 시설장비구축	인프라 성과	인프라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9. 성과확산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인프라 성과
10. 국제협력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 (정성평가) 각 성과유형에 해당하는 성과별 질적 우수성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사업성과(물)의 우수한 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평가
 - *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과의 경우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 * 사업성과(물)의 전체적(집합적) 수준의 우수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준거(해외의 연구 수준, 국내 연구 수준, 국내외 유사사업의 수준, 과거 연구 수준 등)와 함께 제시
- * 개별적 성과물의 탁월성 평가는 지양(「대표성과 평가」에서 별도 평가)
- 각 성과에 점수를 부여한 뒤 그에 대한 판단 근거 제시
 - * (예) 과학적 성과 : 새로운 현상의 발견, 미해결 문제의 해결, 새로운 이론 확립 등 과학적 발전에 기여한 성과
 - * (예) 경제적 성과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통한 시장 창출, 경제적 수익 창출 등
-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한 성과의 경우, 성과의 우수성 관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평가
 - * 성과목표·지표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성과이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수한 성과로 발생한 경우 성과의 우수성 관점 혹은 파급효과 측면에서 제시하고 평가
- (점수 산출) 제시된 성과의 우수성, 핵심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산출
 - 우수성, 핵심성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관련 가중치 판단은 <종합적 연구성과 세부 판단기준> 참고

<종합적 연구성과의 세부 판단기준>

○ (성과의 우수성) 제시된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의 우수성을 검토하고 <표1>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유형별 성과의 우수성 가중치를 부여

<표1> 성과 우수성의 가중치 판단 기준 및 예시

등급	판단 기준	부여 가중치*
S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 연구성과 (예시) - 삼국 특허등록, Impact factor 최고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매우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확실하고, 매우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0.9~1.0
A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선진국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0.7~0.9

	(예시) - 삼국 특허 출원, Impact factor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	
B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외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양호한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매출이 기대되는 연구성과	0.5~0.7
C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 특허등록, Impact factor 중하위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인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나, 매출 발생이 어려운 연구성과	0.3~0.5
D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수준 이하인 경우】 = 해당 성과의 전체적 수준이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 특허출원, Impact factor 하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 이하인 연구성과 -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가능성 희박	0~0.3

* 'A~B'는 'A≤부여 가중치<B'를 의미함

(단, S등급의 '0.9~1.0'의 경우 '0.9≤부여 가중치≤1.0')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우수성의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성과 분야 특성 상 국내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에는 우수성 판단 기준을 변형 적용 가능

※ (참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대표 예시를 제시했으며, 해당 등급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인프라 성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성과의 핵심성) 제시된 해당 성과와 사업목표와의 핵심성을 검토하고 <표2>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성과의 핵심성 가중치를 부여

<표2> 핵심성 가중치 판단 기준 및 예시

<참고>

○ 핵심성 : 해당 성과 창출로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사업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도)

※ 연관성 : 사업이 의도한 성과로 사업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정도(사업 목적은 해당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

* 'A~B'는 'A≤부여 가중치<B'를 의미함

(단, S등급의 '0.9~1.0'의 경우 '0.9≤부여 가중치≤1.0')

○ (근거자료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3>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 해당 점수를 인정

등급	판단 기준	부여 가중치*
S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매우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10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9~1.0
A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8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7~0.9
B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보통인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보통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6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5~0.7
C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4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3~0.5
D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매우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사업 목표를 2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0.3

<표3>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등급	판단 기준	점수 인정
상	근거자료가 타당하여, 제시된 성과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100% 인정
중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75% 인정
하	근거자료가 타당하지 않아,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50% 인정

※ 근거자료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존재 유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 **(성과유형별 점수)** 성과유형별 배점 × 성과의 우수성 가중치 × 핵심성 가중치 × 근거자료의 타당성 인정 비율

* (예) 과학적 성과 = 21점 × 0.8 × 0.8 × 100% = 13.44 ≈ 13.4

○ **(최종점수) 성과유형별 점수의 총 합**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첫째 자리까지 표시)

【대표성과 평가 (20점)】

○ (대표성과 소개서 작성) 5개 이내의 대표성과를 제시하고 대표성과별 소개서 작성

- 사업별로 대표성과는 5개 이내로 제시
 - * 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화 등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기술의 활용에 관련된 우수사례도 포함
 - * 논문 성과의 경우, 해당 사업(과제)명이 논문 사사에 표기되어야 하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해당 사업의 과제에 참여한 경우만 대표성과로 인정
 - * 특허 성과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과제에 참여한 발명자의 기여율 합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표성과로 인정
 - * 성과의 우수성, 성과의 차별성 등 성과소개서를 기반으로 성과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근거자료 제시

<대표성과 소개서 내용 및 항목>

① 성과개요

- 성과명 : 주요 성과명을 기술
- 출처 과제/사업 : 성과가 창출된 시점, 해당 과제와 사업명을 기술

② 성과내용

- 주요내용 요약 : 성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300자 내외로 기술
- 사업과의 연관성/핵심성 : 성과와 사업 목표 간 연관성 및 핵심 성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

③ 기타항목

- 기존 지식/기술 대비 성과의 차별성 : 제시된 성과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다음의 관점에서 기술

단계	설명
1	• 선진연구 추격
2	• 선진연구와 경쟁
3	• 세계 최초 구현

- 성과의 혜택 : 성과의 혜택 및 활용이 어떤 수준인지 다음의 관점에서 기술

단계	설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과 다르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는 변화 • 기존에 제공 가능한 혜택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가능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정도 혜택의 향상 • 기존에 제공 가능한 혜택보다 향상된 혜택을 제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의 향상 •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지 못한 혜택을 제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의 이목을 끌만한 차별적인 혜택의 향상 •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연구성과를 먼저 활용하고 싶을 정도의 혜택을 창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는 발명/발견 • 연구결과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혜택을 제공

- 성과의 혁신성 : 성과가 얼마나 혁신적인 내용인지 근거와 함께 기술

단계	설명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방법으로 현안을 도출, 해결방안을 제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식을 개선하는 발견/발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려진 방법으로 기존 지식을 근본적으로 개선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발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히 새로운 발견/발명

④ 성과근거자료

- 성과의 우수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 * 시험/실험결과
- * 시제품
- * 논문/특허
- * 실용실안
- * SW
- * 기술이전/라이선싱
- * 기타

○ (정성평가) 제시된 대표성과의 질적 우수성에 대해 정성평가 실시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 파급효과, 후속 연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과의 탁월성을 평가하고,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반영하여 대표 성과별 점수를 산출

- 대표성과가 없는 경우 종합적 연구성과에 해당 점수 부여 가능

* 사업의 특성상 대표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부여된

- 배점을 종합적 연구성과에 부여 가능. 단, 대표성과가 없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
- 5개 이내의 대표성과 중, 최고점을 받은 1개의 대표성과 점수로 전체 점수를 같음
 - * 제시된 성과 중, 1개 성과만이라도 세계적 수준에서 매우 탁월한 경우라도 전체 배점의 만점 부여 가능

<대표성과 평가의 세부 판단기준>

○ (성과의 탁월성) 대표성과의 탁월성을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 파급효과, 후속 연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표1>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

<표1> 성과의 탁월성 판단 기준 및 예시

등급	판단 기준	부여 점수*
S	<p>【대표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 연구성과 (예시) - 삼극 특허 등록, Impact factor 최고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매우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확실하고, 매우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p>	16~20
A	<p>【대표성과가 세계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선진국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삼극 특허 출원, Impact factor 상위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큰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높은 매출이 발생된(기대되는) 연구성과</p>	12~16
B	<p>【대표성과가 국내 최고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최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외 특허 등록, Impact factor 중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양호한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고, 매출이 기대되는 연구성과</p>	8~12
C	<p>【대표성과가 국내 수준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 특허 등록, Impact factor 중하위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인 연구성과 -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나, 매출 발생이 어려운 연구성과</p>	4~8
D	<p>【대표성과가 국내 수준 이하인 경우】 = 해당 성과가 국내 통상적인 기술 수준 이하로 판단되는 연구성과 (예시) - 국내 특허 출원, Impact factor 하급에 속하는 학술지에 논문 기재 등 학문적·사회적 기여가 보통 이하인 연구성과 -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가능성 희박</p>	0~4

* 'A~B'는 'A≤부여 점수<B'를 의미함 (단, S등급의 '16~20'의 경우 '16≤부여 점수≤20'을 의미)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우수성의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성과 분야 특성 상 국내 수준이 세계 수준인 경우에는 우수성 판단 기준을 변형 적용 가능

※ (참고)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의 대표 예시를 제시했으며, 해당 등급의 기대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인프라 성과의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탁월성 판단 기준**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제시된 성과의 기존 연구와 차별화 여부
- 성과의 혜택 : 성과의 혜택 및 활용이 어떤 수준인지
- 기술 파급효과 : 기술이전, 매출액 발생, 고용창출 등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적 기여도
- 성과의 혁신성 : 성과가 얼마나 혁신적인 내용 여부
- 후속 연구 가능성 : 후속 기술단계로의 발전 가능성

○ **(성과의 핵심성)** 제시된 해당 성과와 사업목표와의 핵심성을 검토하고 <표2>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성과의 핵심성 가중치를 부여

※ '종합적 연구성과'와 달리 '대표성과 평가'는 핵심성 가중치 등급을 3단계 적용

<표2> 핵심성 가중치 판단 기준 및 예시

<참고>

- 핵심성 : 해당 성과 창출로 사업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사업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도)
 - ※ 연관성 : 사업이 의도한 성과로 사업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정도(사업 목적은 해당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

등급	판단 기준	부여 가중치*
A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7~1.0
B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보통인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보통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4~0.7
C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사업 목표 달성도에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0~0.4

* 'A~B'는 'A≤부여 가중치<B'를 의미함(단, A등급의 '0.7~1.0'의 경우 '0.7≤부여 가중치≤1.0'을 의미)

○ **(근거자료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표3>의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한 해당 점수를 인정

<표3>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등급	판단 기준	점수 인정
상	근거자료가 타당하여, 제시된 성과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100% 인정
중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75% 인정
하	근거자료가 타당하지 않아,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50% 인정

※ 근거자료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존재 유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

※ 평가 대상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변형 적용 가능

○ **(대표성과별 점수)** 성과의 탁월성 부여점수 × 핵심성 가중치 × 근거자료의 타당성 인정 비율

* (예) 대표성과 1 = 18점 × 0.8 × 100% = 14.4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첫째 자리까지 표시)

○ **(최종점수)** 최고점을 받은 대표성과 점수

■ 평가근거자료

- 사업의 성과분석보고서
- 대표성과 성과소개서
- 제시된 사업성과가 사업목표와 연관성·핵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 [성과 우수성] 종합적 성과분석의 결과,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는가? (20점)

■ 배점기준

○ 아래의 표에 따라 판단

답변	배점	판단기준
매우 만족	20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세부 판단기준 4개 모두 만족하는 경우
만족	15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세부 판단기준 4개 중 3개를 만족하는 경우
보통	10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세부 판단기준 4개 중 2개를 만족하는 경우
미흡	5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며, 세부 판단기준 4개 중 1개를 만족하는 경우
매우 미흡	0	• 형식적 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

■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50쪽 이내로 분량 축소 및 분석 기준 완화

※ 기 작성된 성과분석보고서의 분량이 50쪽을 초과할 경우는 인정

※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성은 아래 ‘성과분석보고서 분석항목 예시’ 참고

○ 형식적 요건 판단기준(1~4를 모두 만족)

* 하나라도 부적절한 경우, 형식적 요건은 부적절로 판단

※ 성과분석보고서는 반드시 해당 부처의 평가대상 사업 각각에 대해 제출

* OO부의 평가대상사업이 10개라면 10개의 성과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기준1) 분석대상 : 사업의 일부가 아닌 평가대상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수행
 - * 일부 내역사업만 분석된 경우 부적절. 단, 사업특성상 모든 개별 내역사업별로 분석된 경우는 인정
 - * 단위사업 혹은 그 상위단위로 수행된 성과분석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불인정. 다만 단위사업이 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단위사업 단위의 성과분석은 인정
 - * 내역사업에 기반구축 등 시설장비사업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용(기반구축 등)을 포함하여 성과분석을 실시
 - * 최근 개편된 사업은 현재 사업내용이 성과분석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기준2) 분석시점 : '17년 1월 이후에 성과분석을 수행하여 작성된 성과분석보고서만을 인정
 - * 성과분석 최종보고서가 '18년 자체평가 수행기간 내 제출된 경우는 인정
성과분석보고서 종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예, 관련 공문 등) 제출
- (기준3) 분석범위 : 사업수행에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평가대상 3년 기간 중 최소 2년 이상에 대한 성과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기준4) 분석내용 : 사업의 목표, 성과목표, 추진내용, 추진체계 등에 대한 내용 및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예시)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 목차에 제시되어 있을 것
 - * 자체평가보고서와 차별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성과분석보고서 분석항목 예시>

구분	내용 (예시)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목적 및 개입논리) • 사업추진체계 • 사업예산 등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대비 산출(성과) • 산출의 효율성 • 자원의 최적화 • 목표대비 달성도 및 질적 우수성(타 사업과의 비교)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경제사회 성과 등 • 사업 성과의 활용·확산을 통한 파급효과 • 사업 개선 방안

- ※ 종합적 성과분석보고서는 상위의 분석항목(예시)를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분석항목 제시가 가능하며, 50쪽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 평가부담 완화 취지를 살려 기 작성된 종합적 성과분석보고서가 있을 경우 분량이 50쪽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세부 판단기준

<종합적 성과분석 세부판단의 기준>

구분	내용
성과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활용 여부 • 효과성 분석의 체계적 수행 및 분석 데이터의 합리적 사용 여부
성과분석 결과 (사업의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결과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 • 종합적 성과분석 결과 사업 개선사항, 제언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여부

○ 성과분석에 적용한 분석 방법이 적절한 경우

-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활용한 경우
 - * 효과성 검증을 위한 계량적 기법, 분석을 위한 가정의 타당성 등 분석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
-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가 합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 * 효과성 분석을 위한 분석 체계가 논리적인 비약 없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분석대상 데이터의 범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비교 대상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등 분석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

○ 효과분석결과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경우

- 사업의 결과 사업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 * 분석 결과의 해석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며, 구체적·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함. 분석 방법의 한계점을 무시한 결과의 해석은 부적절로 판단
- 사업의 종합적 성과분석 결과, 사업 개선 사항을 적절히 제시하여 효과적인 사업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언을 도출하여 부처가 이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 경우
 - * 사업 개선 의견 제시도 논리적 비약 없는 결과의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도출되어야 함

○ 최근 3년 평균 예산이 30억 이하인 사업으로 ‘종합적 성과분석’ 대상이 아닌 사업은 아래와 같이 점수 도출

- * 평가지표 ‘목표 달성도’의 배점을 30점 → 40점으로 조정
- * 평가지표 ‘성과우수성1’의 배점을 50점 → 60점으로 조정
(종합적 연구성과 30점 + 대표성과의 우수성 30)

■ 평가근거자료

- 사업의 성과분석보고서

Ⅲ. 행정관리역량

1. 평가목적

-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등 3개 영역별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성과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배점 (100점)
①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20
② 정책품질	15
③ 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
④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
⑤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5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계획(안)의 정평위 의결(5.18. 예정)이 늦어짐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										
측정방법	<p>①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5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등급</td> <td>우수</td> <td>보통</td> <td>미흡</td> <td>미실시</td> </tr> <tr> <td>배점</td> <td>5</td> <td>3</td> <td>1</td> <td>0</td> </tr> </table> <p>○ 평가방법 :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자가진단 실시 ○ 평가기간 : '18.11.1부터 '18.12.31까지 ○ 평가기준 : 부처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 평가 - 우수 : 자가진단 실시결과가 90점이상인 경우 - 보통 : 자가진단 실시결과가 80~90점인 경우 - 미흡 : 자가진단 실시결과가 70점이하인 경우</p>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미실시	배점	5	3	1	0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미실시						
배점	5	3	1	0							
<p>② 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수립(2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등급</td> <td>우수</td> <td>해당없음</td> </tr> <tr> <td>배점</td> <td>2점</td> <td>0점</td> </tr> </table> <p>○ 평가 요소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재배치정원제 운영계획 및 실적</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재배치 실행방안(예시)</p> <p>① (기능간) 기능 감소·쇠퇴 및 불요불급 분야 → 신규·핵심기능에 전환·활용 ② (지역간) 인구 수 변동 등 행정수요에 따른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배치 ③ (기관 상하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배치(본부→소속, 1차→2·3차 현장기관) ④ (계절적·한시적 수요) 연중 업무량 변동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배치·활용</p> <p>예 • 기계화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인력을 ○○인력으로 전환·재배치 • 인구·물동량·수요 변화로 업무량이 증가한 지방관서로 현장인력 재배치</p> </div> <p>○ 평가 기준 - 우수 : 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향후 기능 감축·재배치 소요 발굴 및 신규 분야에 대한 전환·활용 계획 및 계획에 맞추어 실적을 제출한 경우 - 해당없음 : 계획이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계획에 맞지 않게 실적을 제출한 경우</p>	등급	우수	해당없음	배점	2점	0점					
등급	우수	해당없음									
배점	2점	0점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

③ 정부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5점)

가. 정부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관리수준 (2점) : 월평균 정비실적
 $(\sum 1월 \sim 12월 \text{ 기능분류 정비실적}/12) + (\sum 1월 \sim 12월 \text{ 조직정보 정비실적}/12)$

구분	우수	미흡
기능분류정보	1	0
조직관리정보	1	0

- 평가기준 : 정부기능분류·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관리중인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기구·정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정비 실적
- 우수 : 해당 정보의 현행화로 정비대상*이 없는 경우
 - 미흡 : 해당 정보가 현행 정보와 불일치로 정비대상*이 있는 경우

구분	정비대상
기능분류	① 소기능(5단계)·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② 폐지부서가 존재하는 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③ 미정리 또는 현행과 불일치되는 관리정보 보유 단위과제
조직정보	직제개정 시점의 기구·정원 등 조직정보가 조직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되어 불일치한 경우 ※ 조직현황은 조직관리 메뉴에서 조회

나. 정부조직정보시스템 이용율(3점) : 시스템 활용 업무처리* 비율
 $(\text{시스템활용 업무처리* 건수} / \text{전체 업무처리* 건수}) \times 100$

* 개통시점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서 지원되는 업무대상으로 함

구 간	100%	100%-95%	95%-90%	90%-85	85%-80%
배 점	3	2	1.5	1	0

④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5점)

가. 출석 회의실적(2점) : 출석회의 개최 비율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출석회의를 2회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90% 이상	90% 미만 ~ 80% 이상	8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배 점	2	1.5	1	0.5	0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2점) : 여성위원(1점) 및 비수도권 위원(1점)
 위촉비율(각각 평가)

* 위원회별 여성 위촉비율(여성위원 수 / 위촉직 위원 수)의 평균

구 간	40% 이상	40% 미만~ 30% 이상	30% 미만
배 점	1	0.5	0

* 위원회별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비수도권위원 수 / 위촉직 위원 수)의 평균

구 간	30% 이상	30% 미만~ 27% 이상	27% 미만
배 점	1	0.5	0

*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 위촉비율 평균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의 합 / 전체 위원회 수

(예) A위원회 여성 위촉비율이 45%, B위원회 35%, C위원회 25%, D위원회 10%인 경우
 ⇒ (45%+35%+25%+10%) / 4 = 28.8%

* 민간 위촉 위원 소속 직장(현직) 주소가 비수도권*인 위원을 대상

- 현직이 없을 시(퇴직자 등) 직전 근무지로 판단

*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위원회 현황 공개(1점)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횟수

* 연중 부처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월별)를 공개한 횟수

구 간	12회	11회~4회	4회 미만
배 점	1	0.5	0

※ 2018. 1. 1. ~ 12.31. 기간 중 공개한 횟수로 집계

<선택지표> 2개 지표 중 1개 자율적으로 선택 (3점)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보장 정도

가. 자율성 위임정도(1.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1.5	1	0.5	0

○ 평가 기준 : 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위임 활용지원 실적

- 우수 : 자율성 위임 활용 3건 이상

- 보통 : 자율성 위임 활용 2건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

- 미흡 : 자율성 위임 활용 1건
- 실적없음

나. 성과향상을 위한 위한 중앙행정기관장의 노력도(1.5점)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점	1.5	1	0.5	0

<평가요소>

- ① 책임운영기관 신규지정
- ② 책운기관 평가로 자체평가 일원화
- ③ 책운기관 역점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 평가 기준

- 우수 : ① 또는 ②를 충족하거나, ③의 활동사례 4건 이상
- 보통 : ③의 활동사례 3건
- 미흡 : ③의 활동사례 2건 이하
- 실적없음

⑤ 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3점)

구 간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1.5	0

<평가요소>

- ① 공통부서 100% 전환
-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
-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유무(공통·사업부서 100% 복수직렬일 경우)
- ④ 부서의견 수렴 유무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								
	<table border="1" data-bbox="443 286 1412 721"> <thead> <tr> <th data-bbox="448 293 539 338">배점</th> <th data-bbox="544 293 1407 338">평가요소 이행 정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48 344 539 501">3점 (택1)</td> <td data-bbox="544 344 1407 501">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 부서의견 수렴 </td> </tr> <tr> <td data-bbox="448 508 539 665">1.5점 (택1)</td> <td data-bbox="544 508 1407 665">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td> </tr> <tr> <td data-bbox="448 672 539 710">0점</td> <td data-bbox="544 672 1407 710">미실시</td> </tr> </tbody> </table>	배점	평가요소 이행 정도	3점 (택1)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 부서의견 수렴	1.5점 (택1)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0점	미실시
배점	평가요소 이행 정도								
3점 (택1)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 부서의견 수렴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 부서의견 수렴								
1.5점 (택1)	① 공통부서 100% 전환(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② 또는 ③ 선택) ② 사업부서 전환 유무(既 100% 전환된 부처는 ③ 선택) ③ 기존 복수직렬의 효율적 재배정								
0점	미실시								
측정기준 (착안사항)	<p>①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목적 : 각 부처가 조직관리 역량수준을 스스로 진단하여 취약점을 개선하여 조직관리역량 제고에 기여 ○ 평가방법 :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자가진단 실시 ○ 평가기간 : '18.11.1~'18.12.31까지 ○ 평가기준 : 부처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등급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평균 90점이상 우수, 80~90점 보통, 70점이하 미흡, 미실시 * '18년부터는 정부조직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가진단 실시 <p>② 재배치정원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에서는 매년 재배치정원 수를 반영, 재배치 계획 및 실적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p>③ 조직정보 관리 및 시스템 이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간 : 2018.1월 ~ 201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이용율은 시스템 전 기관 이용확산을 고려, 4월~12월 기간 중 평가 예정 ○ 평가관련 자료수집 : 해당 시스템별 등록 데이터 및 시스템 이용현황자료 활용 예정 ○ 평가자료 <table border="1" data-bbox="403 1783 1425 1921"> <tr> <td data-bbox="403 1783 911 1827">정부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수준</td> <td data-bbox="916 1783 1425 1827">정부조직정보시스템 이용율</td> </tr> <tr> <td data-bbox="403 1834 911 1921">시스템별 매월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월평균 정비실적</td> <td data-bbox="916 1834 1425 1921">평가기간(4월~12월) 중 직제개정 업무 수요대비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비율</td> </tr> </table>	정부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수준	정부조직정보시스템 이용율	시스템별 매월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월평균 정비실적	평가기간(4월~12월) 중 직제개정 업무 수요대비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비율				
정부기능분류 및 조직정보 수준	정부조직정보시스템 이용율								
시스템별 매월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월평균 정비실적	평가기간(4월~12월) 중 직제개정 업무 수요대비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비율								

평가지표	<p>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p>
	<p>④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간 : 2018.1.1. ~ 12.31. ○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 관리대상 목록(17.12월 기준)에 있는 위원회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기간 내 폐지된 위원회 및 위원회 정비(폐지, 통합, 협의체 전환) 대상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 제출된 경우는 모수에서 제외 * 사건·사고발생 및 안전 상정 시에만 개최되는 위원회(비상설위원회)는 3년 이상 회의 실적이 없을 경우에만 모수제외 인정(행안부와 협의 필요) * (사실상) 당연직으로만 구성되어있는 위원회 모수 제외 협의 * 위원 미구성, 장기간 회의미개최 등의 사유로 임의적으로 모수 제외 금지 * 여성위원 위촉 비율은 여성부 지침 미적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 본회의·분과위원회의 회의 중 출석회의 인정(서면회의 불인정) - 위촉직 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어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민간위원이나 타 부처 소속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연직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p>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지원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성 특례 활용지원 정도 : 조직·정원, 인사, 예산 관련 분야별 특례 위임사항을 활용하도록 지원한 사례 건수 - 성과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장 노력도 : 책임운영기관 신규 지정 또는 소속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자체평가에 활용하거나 소속 책임운영기관 역점사업 추진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유무 <p>※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p> <p>⑥ 본부의 행정직렬 정원의 복수직렬 전환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 절차 :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적정 규모 산정 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직렬 전환 관련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공문발송 예정(행정안전부→부처) - 대상 직급 : 본부의 4·5급 이하 행정직렬

<p>평가지표</p>	<p>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20점)</p>
	<p>* 既 100% 복수직렬로 전환된 부처의 경우 기존 기술직렬간 효율적 재배정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 방법 : 직제시행규칙 상 본부 정원표 및 부서별 정원배정표 개정 전·후 비교 - 증빙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제시행규칙 개정 전·후 본부 정원표(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 2) 직제시행규칙 개정 전·후 부서별 정원배정표 통보 공문(부처 →행정안전부) 3) 복수직렬 전환 결과 통보 공문 사본(부처→행정안전부) 4) 부서 의견 수렴 관련 공문 사본

평가지표

2. 정책 품질(15점)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5점)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4점	2점	1점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점)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구분	등록율(%)	점수
탁월	98이상	3
우수	95~97	2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미개최(0점)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점), 기타 홈페이지·블로그 등(0.5점), 무실적(0점)

③ 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점)

- 2018년 중앙우수제안(행안부)에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제출실적(1점)

* 국민제안·공무원제안 각각 1건 이상 존재 1점, 미 존재 0점

-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관련 정부부처 경진대회 수상 여부(1점)

* 수상 1점, 미 수상 0점

- 국민 참여·소통·협업 우수사례 2건(3점)

측정방법

평가지표

측정기준
(착안사항)

2. 정책 품질(15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5	1.0
	사례 2	1.5	1.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5점)

가. 지표 개요

- 기관별 지식행정 활성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 「지식행정」의 개념 및 추진 근거 》

- 지식행정의 개념
정부 내 각종 업무 관련 지식의 창출·공유·활용과정을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관리의 전자적 관리), 동 시행령 제35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 행정 활성화)

나. 측정 방법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점	4점	2점	1점

다. 측정 기준

-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5점)

2. 정책 품질(15점)

【 평가요소 】

-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했는가?
※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2항
- ㉡ 지식행정 책임관.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가?
※ 공문, 메모보고 등 명시적 근거 제출
- ㉢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기관 자체 KMS 운영, 온-나라 표준 KMS 운영, 업무포털에서 지식공유나 업무개선 제안.토론과 같은 지식 관련 게시판 운영 등
- ㉣ 업무포털이나 자체 KMS에 '온-나라 지식'으로 링크가 있는가?
- ㉤ 지식 활동이 두드러진 직원을 우대하고 있는가?
※ 활동 예시 : 유용한 지식을 게시하기, 연구모임 활동하기 등
※ 우대 예시 : 포상.교육훈련.승진, 금전적 지원 등
- ㉦ 직원들의 지식 활동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 지식관리시스템이나 연구모임에서 어떤 직원이 업무개선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안이 구체화되어 실제로 개선 실적으로 이어진 사례 등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근거 제출 (제안 내용 화면 캡처, 포상 사유, 개선실적 언론 보도 등 포함 권장)

- 탁월(5점) : 「2018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또는 ㉠~㉦ 평가요소 중 6개를 충족한 기관
- 우수(4점) : ㉠~㉦ 평가요소 중 4~5개를 충족한 기관
- 보통(2점) : ㉠~㉦ 평가요소 중 2~3개를 충족한 기관
- 미흡(1점) : ㉠~㉦ 평가요소 중 1개 이하를 충족한 기관
※ 국방부, 경찰청 등 폐쇄망 기관은 평가요소 ㉠항을 충족하였다고 간주

<평가요소 정량 평가 설명>

- ㉠ : 기관 자체 지식행정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 ㉡ : 지식행정과 관련한 조직과 역할(담당자)이 명시된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제시 여부
- ㉢ : 기관 KMS, 온-나라 표준 KMS 또는 기관 업무포털에서 지식공유나 업무개선, 제안.토론 게시판 등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 ㉣ : 기관 KMS나 업무포털에 '온-나라 지식'으로 연결되는 링크 존재 유무

평가지표

2. 정책 품질(15점)

- ㉔ : 유용한 지식을 게시하거나 연구모임활동 등 지식활동을 잘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여부
- ㉕ :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되는 등 직원들의 지식활동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 존재 유무
- 측정 기간 : 2018.1.1. ~ 2018.12.31.

○ 제출서류 : ① 기관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 등록경로: 온-나라 지식(www.on-nara.go.kr) > 커뮤니티 > 범정부 지식행정 공유마당 > 게시판/자료실 > 2018년 활성화 계획 > 등록

② 기관별 추진 실적

※ 각 항목의 실행 여부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공식적 자료로 제출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가.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 공개과제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3점)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개최하였는지를 평가(1점)
-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한 자체 홍보 노력도 평가(1점)

나. 측정방법(정량지표)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비율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

다. 세부 측정기준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 비율(3점)
 - (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등록 건수/등록대상 건수

평가지표

2. 정책 품질(15점)

구분	등록율(%)	점수
탁월	98이상	3
우수	95~97	2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미개최(0점)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점), 기타 홈페이지·블로그 등(0.5점), 무실적(0점)

라. 제출서류

-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진행사업)·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사업현황(목록) 및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에 실제 등록한 증빙자료(화면 캡처)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공문과 결과보고서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실적 증빙자료

마. 평가범위

- 부처가 자체 추진한 실적

③ 참여를 통해 우수정책을 만들어낸 실적(5점)

가. 지표 개요

- 정책의 투명성, 민주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 시 국민과 소통·협업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정량 및 정성평가

나. 측정방법(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

○ (정량평가)

- ① 2018년 중앙우수제안(행안부)에 추천한 자체우수제안 제출실적(1점)
 - * 국민제안·공무원제안 각각 1건 이상 존재 1점, 미 존재 0점

평가지표

2. 정책 품질(15점)

②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관련 정부부처 경진대회 수상 여부(1점)

* 수상 1점, 미 수상 0점

○ (정성평가) 국민 참여·소통·협업 우수사례 2건(3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5	1.0
	사례 2	1.5	1.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점)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대국민 소통·홍보, 4차 산업혁명, 반부패·청렴 등) 교육 이수시간 = 4급이하 현원의 총 교육 이수 시간 합계 / 4급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3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2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11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4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0점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4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4점	3점	2점	0점

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 '17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정액분 제외) 대비 '18년도 감축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4% 이상~ 7% 미만	1% 이상~ 4% 미만	1%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점

※ 다음의 경우 0.5점 가점 부여(2.5점 이하인 기관만 해당)

- ① '16년도 대비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을 10% 이상 감축한 기관,
- 또는 ② '17년도 1인당 초과근무 실적이 월 15시간 미만이면서 '18년도에도 유지한 기관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2점)

*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배점 적용

등 급	90%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측정방법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5점)

* 평가요소(교류직위비율, 특별추진노력, 인센티브부여)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80점 미만	40점~60점 미만	20점~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5점	3.5점	2.5점	1.5점	0.5점	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2.5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80점~90점 미만	70점~80점 미만	60점~70점 미만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4점)

가. 장애인 채용 노력(4점)

-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중증 장애인 신규 채용 여부 (4점)

배점	4점	3점	2점	0점
실적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1명이상 신규채용	중증장애인 1명이상 신규채용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모두없음

나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노력도(△2점)

- 성희롱·성폭력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 및 적절한 시정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제출실적에 따라 평가

등급	2차 피해발생하고 미시정조치	2차 피해발생	해당 없음
배점	-2점	-1점	0점

〈선택지표〉 2개 지표중 1개 자율적으로 선택 : 3점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p>⑥ 상시학습 이수비율</p> <p>*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391 392 1342 528"> <tr> <td>구 분</td> <td>93% 이상</td> <td>83%~93% 미만</td> <td>73%~83% 미만</td> <td>63%~73% 미만</td> <td>63% 미만</td> </tr> <tr> <td>배 점</td> <td>3점</td> <td>25점</td> <td>2점</td> <td>1점</td> <td>0.5점</td> </tr> </table> <p>⑦ 전문직위 지정 비율</p> <p>* 기관별 전문직위 지정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본부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395 692 1348 846"> <tr> <td>배 점</td> <td>3점</td> <td>25점</td> <td>2점</td> <td>1점</td> <td>0.5점</td> </tr> <tr> <td>실 적</td> <td>16% 이상</td> <td>13% 이상 ~16% 미만</td> <td>10% 이상 ~13% 미만</td> <td>5% 이상 ~10%미만</td> <td>5% 미만</td> </tr> </table>	구 분	93% 이상	83%~93% 미만	73%~83% 미만	63%~73% 미만	63%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실 적	16% 이상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3% 미만	5% 이상 ~10%미만	5% 미만
구 분	93% 이상	83%~93% 미만	73%~83% 미만	63%~73% 미만	63%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실 적	16% 이상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3% 미만	5% 이상 ~10%미만	5% 미만																				
측정기준 (착안사항)	<p>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p> <p>-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대국민 소통·홍보, 4차 산업혁명, 반부패·청렴 등</p> <p>*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p> <p>-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4급 이하 현원 = $\sum(4급\ 이하\ 교육\ 참석인원 * 교육시간) / 4급\ 이하\ 현원$</p> <p>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p> <p>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p> <p>< 평가요소 ></p> <p>①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이용현황 보고여부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연 2회)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p> <p>②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자율목표 최소기준</p> <p>-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설정</p> <p>※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22% 이상</p> <p>-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18.12.31.기준)</p> <p>*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p> </div> <p>③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p>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설정
 -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간부급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20% 이상
 - 4급 이상(복수직급) 간부진의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인원/ 4급 이상 간부진 현원('18.12.31 기준)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연가 이용 현황(연 2회)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반올림하여 일단 위로 계산)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평균 연가 이용 실적 이상으로 목표 설정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10일 이상

- ㉢ 간부진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4급(복수직급) 이상 간부진의 연가사용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실적 이상으로 목표 설정하되,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10일 이상 목표 설정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

- 3점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0% 이상 감축
- 2.5점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7% 이상~10% 미만 감축
- 2점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4% 이상~7% 미만 감축
- 1점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 이상~4% 미만 감축
- 0점 :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 미만 감축

※ 누적 감축 곤란도 보정 : 다음의 경우 0.5점 가점 부여(2.5점 이하인 기관만 해당)
- ① '16년도 대비 '17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을 10% 이상 감축한 기관,
또는 ② '17년도 1인당 초과근무 실적이 월 15시간 미만인면서 '18년도에도 유지한 기관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 기관별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실적을 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90% 이상
- 1.5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80% 이상 90% 미만
- 1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계획인사교류 비율(70점) : 2018년 정원대비 계획인사교류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정원 : 전체 고위공무원~7급 중 전문직위 등 교류가 곤란한 인원 제외

- 특별추진노력(20점) : 부처간 고공단 교류 및 전략교류, 인사·법제·전산·홍보 등 전문분야 교류실적(* 한 가지 해당 시 10점, 두 가지 이상 해당 시 20점)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인사인센티브 부여(10점) :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인원 / 전체교류인원)×10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비율(10점), 공모 직위 외부인사(타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인사

가. 장애인 채용 노력

-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중증 장애인 신규 채용 여부 (4점)

배점	4점	3점	2점	0점
실적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1명이상 신규채용	중증장애인 1명이상 신규채용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전년대비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및 중증장애인 신규채용 모두없음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전전년도말 기준
 예) 2018년도 평가(2019.1월)시 2017년도 각 부처 고용률 평가
 ※ 의무고용률 : '18년까지 3.2%, '19년부터 3.4%
- 중증 장애인 신규채용 : 자체 채용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나.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조치 노력도(△2점)

- 평가대상 기간 : 2018.1.1. ~ 2018.12.31.
- 작성대상 : 본부 + 소속기관 포함
- 평가기준
 - 성희롱·성폭력 관련 2차 피해 발생 : -1점
 - 조직(부서) 은폐, 피해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 발생한 경우(①감사원·인사혁신처 감사 지적, ②검찰·경찰 등 수사 및 조사 통보되거나 ③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차 피해 적발 후 시정 조치 여부 : -1점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2차 피해 발생(감사지적 또는 수사 및 조사결과 통보받거나 자체 인지*)하였으나 신속히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부처 자체조사를 통한 결과
- 해당기관에서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등 논란이 계속 되는 경우

※ 제출 자료

○ 실적 요약 자료

건 수	2차 피해 발생		
	감사지적 (감사원·인사혁신처)	수사결과 (검찰·경찰)	사회적 물의 (언론보도)

구 분	2차 피해 발생		
	소 계	시정조치	미시정조치 (조치 후 이의제기 계속 포함)
소 계			
감사지적 (감사원·인사혁신처)			
수사결과(검찰·경찰)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 실적 증빙자료 : 2018년 말 기준 제출 자료

⑥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 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8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⑦ 전문직위 지정 비율

- 기관별 전문직위수 / 전체 직위수 X 100(본부기준)

※ 전체 직위수 : 전체 직위수: 정무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연구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p style="text-align: center;">지도직, <u>전문분야 3~5급 일반직 정원(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부처)</u>, 개방형/공모직위를 제외한 총 본부 정원수</p> <p><배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6% 이상 - 2.5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3% 이상 16% 미만 - 2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0% 이상 13% 미만 - 1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이상 10% 미만 - 0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미만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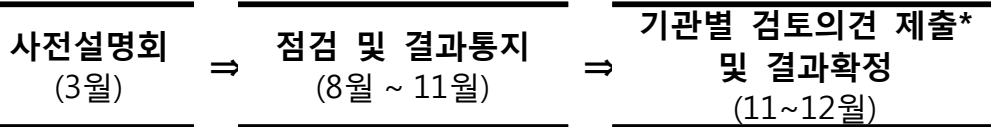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3점)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점)

- '18년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결과를 활용
 - 기관별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자원관리, 정보화 관리체계)을 자체 측정* 후 전문가 점검을 통한 수준진단
 - * EA기반 '2018년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모델 해설서' 참조

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4점)

- (대상) 기관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한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0호)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사업
- (방법)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절차 및 일정) '18. 1월 ~ 12월



-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기관에 한함
- (기준) 사업별 성과관리계획 수립(25점),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선정·관리(25점), 종합적 보고·관리(15점), 핵심과제 관리(20점), 성과결과의 환류(15점)
- (배점)

구분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 41 이상	40 이하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0점	0점

다. 효율적 정보화 추진(3점)

- (대상) 기관에서 기획·예산신청 및 계획을 수립한 정보화사업(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포함)
- (방법)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절차 및 일정) '18. 1월 ~ 12월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사전설명회
(3월)

⇒

점검 및 결과통지
(8월 ~ 11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
및 결과확정
(11~12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기관에 한함

- (기준) 사전검토 대상 사업식별/관리(20점), 예산수립 전 단계 사전추진 타당성 검토(10점), 예산수립단계 정보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10점), 검토결과 반영여부 등 정보화사업 검토(10점), 검토결과 RFP등 반영 여부(20점), 정보시스템을 통한 결과관리(15점), 검토기준 마련 및 결과관리(15점)

- (배점)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3점)

- (대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시스템
- (방법)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절차 및 일정) '18. 1월 ~ 12월

사전설명회
(3월)

⇒

점검 및 결과통지
(8월 ~ 11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
및 결과확정
(11~12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기관에 한함

- (기준) 전년도 이행계획 조치(10점), 운영 성과측정 계획수립(10점), 성과측정(20점), 개선방안마련(20점), 근거자료등의 관리(30점),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10점)

- (배점)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측정방법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4점)

가.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수준(20%, 0.8점)

- '18년 "행정기관 웹사이트 총량 조사" 결과를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평가

지표	점수			
	총량관리 완료*	10% 이상	5~10%	5%미만
총량감축률	0.8	0.8	0.4	0.1

* 총량관리 완료라 함은 총량관리 대상 웹사이트가 1개인 경우임(증빙자료 : 국장 이상 내부결재)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80%, 3.2점)

- '18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를 활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측정지표 활용

진단결과 구분	92점 이상	87~92점 미만	82~87점 미만	77~82점 미만	77점미만
	웹 호환성(40%)	1.6	1.3	1.0	0.7
웹 접근성(40%)	1.6	1.3	1.0	0.7	0.3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가 유효한 웹 사이트는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가점(+5) 부여하고, 진단 기간중 품질마크 인증이 획득했을 경우도 가점(+5) 부여

측정방법

③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3점)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추진 실적(1점)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등 지능정보기술을 소관 정보시스템·내부행정·대민서비스 등에 접목한 사례

등급	우수(3건이상)	보통(1~2건)	미흡(실적없음)
배 점	1	0.5	0

- 기관의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1점)
 -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사·홍보·교육 등 활동사례

등급	우수(2건이상)	보통(1건)	미흡(실적없음)
배 점	1	0.5	0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충실도(1점)**

- 지능형 정부 추진 실적을 통한 행정혁신, 업무프로세스 및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 사례 등을 평가

등 급	우수(30%)	보통(40%)	미흡(30%)
배 점	1	0.5	0

* 전체 기관을 함께 평가하여 기관수에 따른 비율로 점수 부여(상대평가)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13점)**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점)

○ **평가 요소**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EA기반 '18년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 결과를 활용

영역	영역별 정의
자원관리	기관별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정보(기준정보) 관리, 연계 및 유관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품질수준 측정 * 측정항목 : 정보자원 관리현황, 소속/산하기관 정보자원 관리현황
정보화 관리체계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된 정보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역량확보 수준 측정 * 측정항목 : 추진기반, 역량확보

○ **평가 산식**

- 자원관리 영역 × 0.7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 0.3

※ 자원관리 및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

정보화추진 역량수준	5.0 이하 ~ 4.5 미만	4.5 미만 ~ 4.0 미만	4.0 미만 ~ 3.5 미만	3.5 미만 ~ 3.0 미만	3.0 미만 ~ 2.0 미만	2.0 미만 ~ 1.0 미만	1.0 미만
환산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나. 정보화사업 성과관리(4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수립부터 성과측정, 환류까지 단계별 추진사항을 점검

※ 소속·산하기관 관리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출연·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한 정보화사업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0호)에 따른 성과관리 대상 사업

○ 평가 방법

-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에 따른 성과계획 수립, 자체점검 결과 등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평가 산식

- ∑단계별 점검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4점)
- ※ 사업별 성과관리계획 수립(25점), 성과목표 및 지표의 선정·관리(25점), 종합적 성과분석·진단(15점), 핵심과제 관리(20점), 성과결과의 환류(15점)

구분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 41 이상	40 이하
점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0점	0점

다. 효율적 정보화 추진(3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유사·중복, 타당성 등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점검
- ※ 소속·산하기관 관리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출연·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기획·예산신청 및 계획을 수립한 정보화사업(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포함)

○ 평가 방법

- 예산, 계획수립, 발주 단계별 자체 및 행정안전부를 통한 사전검토(사전협의) 결과 및 신청내역을 근거로 평가
-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측정기준
(착안사항)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평가 산식

- ∑단계별 점검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3점)

※ 사전검토 대상 사업식별(20점), 예산 및 발주단계에서 사전검토 실시(10점), 예산수립단계 정보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10점), 검토결과의 반영여부 등 정보화사업 검토(10점), 정보시스템을 통한 결과관리(15점), 검토기준 마련 및 결과관리(15점)

구분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3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사업 이행을 통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 관리(계획수립, 성과측정,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를 평가

○ 평가 대상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시스템

○ 평가 방법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수립, 성과측정, 개선방안 마련,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범정부EA포털을 통해 등록·관리된 내역을 기준으로 평가

-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참조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평가 산식

- ∑단계별 점검항목 점수 구간에 따라 배점(0~3점)

※ 전년도 이행계획 조치(10점), 운영 성과측정 계획수립(10점), 성과측정(20점), 개선방안 마련(20점), 근거자료등의 관리(30점),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10점)

구분	91 이상	90 이하 ~ 81 이상	80 이하 ~ 71 이상	70 이하 ~ 61 이상	60 이하 ~ 51 이상	50 이하
점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4점)

가.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수준(20%, 0.8점)

○ 평가 요소

- 웹사이트 총량관리 이행 수준 :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및 감축률 이행을 통해 이용률과 활용률이 저조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웹사이트 총량 감축에 대한 이행수준을 평가

영역	영역별 정의
총량 감축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통·폐합 등을 통해 각 기관별로 지정된 웹사이트 총량에서 매년 10% 수준의 감축률을 이행하여 기관별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했는지 측정

○ 평가 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

○ 진단 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18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점검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을 평가

지표	점수			
	총량관리 완료*	10% 이상	5~10%	5%미만
총량감축률	0.8	0.8	0.4	0.1

* 총량관리 완료라 함은 총량관리 대상 웹사이트가 1개인 경우임(증빙자료 : 국장 이상 내부결재)

▪ 웹사이트 총량감축률: (폐기 웹사이트 수+통합 웹사이트 수)/웹사이트 총량 × 100%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80%, 3.2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각 2개(기관대표(50%) + 서비스(50%)) 웹사이트의 페이지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

측정기준
(착안사항)

평가지표

측정기준
(착안사항)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디어 페이지), ⑤ActiveX(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등) 사용 정도 등 7~10페이지

※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총량대상에서 무작위 선정

○ 진단결과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18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17년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을 이용

진단결과 구분	92점 이상	87~92점 미만	82~87점 미만	77~82점 미만	77점미만
웹 호환성(40%)	1.6	1.3	1.0	0.7	0.3
웹 접근성(40%)	1.6	1.3	1.0	0.7	0.3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가 유효한 웹 사이트는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가점(+5) 부여하고, 진단 기간중 품질마크 인증이 획득했을 경우도 가점(+5) 부여

③ 지능형 전자정부 추진 노력(3점)

○ 평가 요소

-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각 기관별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석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실적
- 신기술 적용, 서비스 개선사례, 행사·홍보·교육 등 활동사례
- 지능형 정부 추진 실적을 통한 행정혁신, 업무프로세스·대국민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 사례 등

○ 평가 대상

- 44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 산식

-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의 우수실적을 선정하여 제출
- 제출된 결과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우수실적 제출여부, 추진 노력 및 추진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결과 통보

측정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평가 산식

-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4 / 100

○ 평가요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기본적인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침해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3개 분야 12개 지표)

분야	가중치				12개 지표(24개 항목)	비고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5점)	4	6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2)	
	10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2)	
	4	8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2)	
	7	11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2)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30점)	7	12	9	17	5. 개인정보 수집(2)	
	5	9	7	13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절차 운영(2)	
	13	-	14	-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2)	
	5	9	-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	
침해대책 수립 및 이행 (45점)	10	16	15	21	9. 개인정보 유·노출방지 조치 (2)	
	7	13	10	19	10.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재해·재난 대응 절차 수립(2)	
	18	-	20	-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이용 및 관리(2)	
	10	16	-	-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2)	

※ 2, 7, 8, 11, 12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점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균등 분배한 가중치 적용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 6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 SW 개발보안 준수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사이버보안교육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측정방법

지표	설명												
SW 개발보안 준수율 (20)	<p>○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20)</p> <p>. (대상) '18.1월 이후 추진된 신규개발 정보화 사업(감리대상)</p> <p>.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p> <p>※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p> <p>.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검항목</th> <th style="background-color: #d9ead3;">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 상세사항 명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SW개발보안 의무화 대상 외,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 기관 자체사업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td> <td style="text-align: center;">+5 (가점)</td> </tr> </tbody> </table>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	5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	5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 상세사항 명시	5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5	SW개발보안 의무화 대상 외,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 기관 자체사업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	+5 (가점)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	5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	5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 상세사항 명시	5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5												
SW개발보안 의무화 대상 외,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 기관 자체사업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	+5 (가점)												
<p>※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15점 부여, 가점은 배점(20점)내에서 부여</p> <p>※ '11월말 기준 최종보고서 제출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중간 증적 제출 가능, 미제출시 감점 예정</p>													
SW개발보안 교육 이수실적 (10)	<p>○ 전산직 및 정보화사업 관련 담당자의 SW개발보안 교육 이수실적(10)</p> <p>. (대상) 전산직 5급 이하 및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타직렬* 5급 이하 담당자(소속기관 포함)</p> <p>* 개발사업 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보수 용역 검수/검사자 또는 사업관리담당자</p> <p>. (방법)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 비율</p> <p>- 교육명(예시) : SW개발보안 일반과정, SW개발보안 심화과정, SW보안약점 진단원 양성과정 등</p> <p>(산식) ('16~'18년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명) / '18.11월 기준 기관 전체 5급 이하 대상 직원(명)) * 100</p>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방법

교육 이수율	점수
80% 이상	10점
80% ~ 70% 미만	8점
70% ~ 60% 미만	6점
60% ~ 50% 미만	4점
50% 미만	2점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교육 확인 : <http://academy.kisa.or.kr/main.kisa>

사이버보안 교육실적 (10)

○ 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교육 이수실적(10)
 . (대상) 해당기관 전 직원(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
 . (방법) 년 1회 이상 피평가 기관주관으로 전 직원 대상 정보보호 관련 2시간 이상 집합 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기관내 일반 직원들이 준수해야 될 정보보호 관련 사항으로 세부 콘텐츠는 기관 자율 결정
 (산식) ('18년 기관 사이버보안 교육 이수자(명) / '18.11월 기준 대상 직원(명)) * 100

교육이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5% ~ 80% 미만	6점
50% ~ 65% 미만	4점
50% 미만	2점

※ 현원 수는 인사처 협조를 통해 확인, 기관은 교육이수자 증빙자료 제출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40)

○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4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대한 개선 조치율 (20)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20)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시스템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18.11월말 기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미 입주기관은 '기관자체 웹 취약점결과'를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① 이행점검 시까지 조치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18.11월 말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취약점 이행점 검결과 자료협조 예정(피평가 기관으로부터 증적자료 제출받지 않음)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웹 취약점 조치율</th> <th style="width: 4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5% 이상</td> <td>20점</td> </tr> <tr> <td>80% ~ 95% 미만</td> <td>16점</td> </tr> <tr> <td>60% ~ 80% 미만</td> <td>12점</td> </tr> <tr> <td>50% ~ 60% 미만</td> <td>8점</td> </tr> <tr> <td>50% 미만</td> <td>4점</td> </tr> </tbody> </table>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20점	80% ~ 95% 미만	16점	60% ~ 80% 미만	12점	50% ~ 60% 미만	8점	50% 미만	4점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20점												
80% ~ 95% 미만	16점												
60% ~ 80% 미만	12점												
50% ~ 60% 미만	8점												
50% 미만	4점												
	<p>-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웹 표준 점검항목’(21개)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 센터 미입주 시스템 중 2개 이상 시스템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 제출 <p>.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p> <p>① 이행점검 시까지 조치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p> <p>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웹 취약점 조치율</th> <th style="width: 4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5% 이상</td> <td>20점</td> </tr> <tr> <td>80% ~ 95% 미만</td> <td>16점</td> </tr> <tr> <td>60% ~ 80% 미만</td> <td>12점</td> </tr> <tr> <td>50% ~ 60% 미만</td> <td>8점</td> </tr> <tr> <td>50% 미만</td> <td>4점</td> </tr> </tbody> </table> <p>※ 1개 서비스만 실시하였을 경우 점수의 50%만 반영, 기관자체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4점 반영</p> <p>※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미입주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p> <p>① 센터에서 '18년 웹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은 시스템 2개 이상</p> <p>② 센터에서 기관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였을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20)’를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p>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20점	80% ~ 95% 미만	16점	60% ~ 80% 미만	12점	50% ~ 60% 미만	8점	50% 미만	4점
웹 취약점 조치율	점수												
95% 이상	20점												
80% ~ 95% 미만	16점												
60% ~ 80% 미만	12점												
50% ~ 60% 미만	8점												
50% 미만	4점												
<p>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10)</p>	<p>o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10)</p> <p>. (대상) 대민서비스 관리자 계정과 대민서비스 관련 시스템SW (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p> <p>* 시스템관리자가 사용하는 Admin계정, 예시> OracleDB : sys, system, WAS : deploy 시 사용하는 계정, 백업SW : 백업스케줄 생성가능한 계정 등</p> <p>.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p> <p>① (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p> <p>※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p> <p>※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화면덤프, 유지보수 보고화면 덤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p>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table border="1"> <tr> <th colspan="2">점검항목</th> </tr> <tr> <td colspan="2">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td> </tr> <tr> <td colspan="2">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td> </tr> <tr> <td colspan="2">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td> </tr> </table>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점검항목												
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p>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패스워드 준수율</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95% 이상</td> <td>10점</td> </tr> <tr> <td>80% ~ 95% 미만</td> <td>8점</td> </tr> <tr> <td>60% ~ 80% 미만</td> <td>6점</td> </tr> <tr> <td>50% ~ 60% 미만</td> <td>4점</td> </tr> <tr> <td>50% 미만</td> <td>2점</td> </tr> </tbody> </table>	패스워드 준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패스워드 준수율	점수												
95% 이상	10점												
80% ~ 95% 미만	8점												
60% ~ 80% 미만	6점												
50% ~ 60% 미만	4점												
50% 미만	2점												
<p>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p>	<p>○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 (5)</p> <p>: 직무 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p> <p>※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화면 덤프, 유지보수 보고서 화면 덤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p> <p>○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주기적 점검 (5)</p> <p>: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5점, 접근기록을 6개월 미만 보관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 3점, 그 외 0점</p> <p>* 홈페이지 등에 조회, 로그인 등 서비스사용자의 IP등 로그기록</p>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6점)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관리, 인적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나.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1점)

- 해킹메일 대응·모의침투·도상훈련 등 국정원 주관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반영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p>① 개인정보보호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관리체계(25), 보호대책수립(30), 침해사고대책(45)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처분횟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p>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개발보안 준수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사이버보안교육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p>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p> <p>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정책 수준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인적보안 수준 <p>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위기관리수준 ○ 전자정보 보안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p>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킹메일 대응 수준 ○ 전산망 모의침투 대응 수준 ○ 사이버위기 대응(도상훈련) 수준